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4-제12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1

2.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7

3.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국토교통부] 11

4.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16

5.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환경부] 24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충청북도] 33

2.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 [서울특별시] 39

3.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50

4. 공영장례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55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63

2.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하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69

- [참고]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분야) (통계청) ····· 86

3. 건설공사비 급등 대응 동향(나라살림연구소) ····· 94

4.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99

Ⅳ.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재직 유도정책 마련 필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07

2. 기초연금 재정자주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115

3.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수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0

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실집행 이월 최소화 필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4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함

1 추진배경

○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저출생·지방소멸위기 대응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확산, 초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 공공보건의로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 (지역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패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 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

○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1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함.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되어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함

* (대상) 지방의료원(분원 포함),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임

2 지역경제 활력 확산

○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함

*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 감소

○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함

* (대상)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3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함. 또한,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5에 따른 감면액

○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함

*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 전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4 지방 필수기능 보강

○ 상시화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함. 또한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이 반영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함

* (현행) 안전·보건예산 →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 고용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함

* (현행) 고용률·실업률 →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 **(시행시기) 2025년 산정 시 반영**

2.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 (교부기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 신설**

○ (세부 산정방식) 저출생 대응 투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함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

< 현행 >

교부기준	비중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

⇒

< 개정안 >

교부기준	비중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대체 신설)	**25%**
보유세 규모	5%

○ 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 재설계함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별 비중 및 세부 산정방식(안) >

교부기준	현행	교부기준	개정안
재정여건	50%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사회복지	20%
지역교육	10%	**저출생 대응**	**25%**
보유세 규모	5%	보유세규모	5%

세부 산정방식(안)
▪ 저출생투자비지수
▪ 영유아 수 비율
▪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개정 진행 중

○ (시행시기) **2026년 산정 시 반영**

3 기대효과

○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함

○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이 완화, 궁극적으로 공공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함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예산과]

○ 정부에서 전북자치도에 2022년부터 교부한 지방교부세는 <표 1>과 같음. 2022년(결산 기준)에 비해서 2023년(결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254,501백만원(16.9%) 감액, 2023년(결산 기준)에 비해서 2022년(제2회 추경 기준) 지방교부세는 105,144백만원(8.4%) 감액되었으며, 2025년(예산안)은 2024년(제2회 추경 기준)보다 1,724백만원(0.2%) 증액되었음

< 표 1 > 2022년부터 2025년(안) 전북자치도 지방교부세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결산)	2023년(결산)	2024년(2회 추경)	2025년(안)	비고
계(지방교부세)	1,506,602	1,252,101	1,146,957	1,148,681	
전년대비증감률		**△16.9%**	**△8.4%**	**0.2%**	
보통교부세	1,417,483	1,136,672	1,055,690	1,092,000	
특별교부세	31,106	59,729	42,784	-	
소방안전교부세	58,013	55,700	48,483	56,681	

< 출처 : 전북자치도 본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였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교부액 중 전북자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표 2 > 2022년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지방교부세)	81,044,923	67,529,747	66,759,324	
전년대비증감률		**△16.7%**	**△1.1%**	
보통교부세	70,414,236	59,519,727	59,843,917	
특별교부세	2,177,760	2,062,534	1,850,842	
부동산교부세	7,567,673	4,960,858	4,109,800	
소방안전교부세	888,254	986,628	954,765	

<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현황」>

< 표 3 > 2022년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에서 전북자치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행정안전부	81,044,923	67,529,747	66,759,324	
전북자치도	1,506,602	1,252,101	1,146,957	
비율	**1.86%**	**1.85%**	**1.72%**	

○ 전북자치도 예산과에서는 바뀌는 지방교부세 산정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북자치도가 지방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 1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구분	항목	개선방안
[1]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공공의료 (보정수요)	(신설)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원 * (대상)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분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신설)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수 반영('26년~)
	기회발전특구 (보정수요)	(신설) 기회발전특구 면적 기준 지역관리비 지원
[2] 지역경제 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자체노력)	(현행)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증감률 × 결산액(인센티브·페널티) (개선) 페널티 폐지
	위기지역 (보정수요)	(현행) 접경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 × 40% (개선) 접경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 × 50%
[3]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출산장려 (보정수요)	(현행) 합계출산율 구간별 반영률 75~300% (개선) 합계출산율 구간별 반영률 150~600%
	저출생 지원 (보정수요)	(신설) 저출생 관련 세제지원 세수감소분* 100% 보전 * 출산·양육지원 감면, 생초 주택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출산·양육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사회복지 (보정수요)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아동, 장애인 수 × 30% (개선)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아동, 장애인 수 × 33%
[4] 지방 필수기능 보강	재해·재난대응 (보정수요)	(재해복구대응) '24년 일몰 → 일몰폐지 (재난안전투자) 안전·보건예산 → 재난안전예산
	일자리 (보정수요)	(현행) 실업률·고용률, '24년 일몰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27년 일몰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수 추가 반영

2.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 '24년 상반기, 대형사고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수 증가 ('24.3분기에는 감소)
◇ 정부, 향후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 집중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통해 밀착관리 계획
◇ 산업안전 점검·감독 내실화, 노·사의 위험성평가 적극 참여 등 사망사고 감소 노력

1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

2 주요내용

○ **'24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 (4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망자는 **16명 (3.5%)**, 사고건수는 **38건 (8.5%)** 감소

○ ('24.3분기) 건설업 203명 (200건), 제조업 134명 (108건), 기타업종 106명 (103건) 발생

* 건설업 : 37명, △15.4% / 제조업 : 11명, 8.9% / 기타업종 : 10명, 10.4%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총괄)≫

구 분		총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사망자수 (명)	'23.3분기	459	240	123	96
	'24.3분기	443	203	134	106
	증감	△16	△37	+11	+10
	증감율	△3.5	△15.4	+8.9	+10.4
사망사고 건수 (건)	'23.3분기	449	235	121	93
	'24.3분기	411	200	108	103
	증감	△38	△35	△13	+10
	증감율	△8.5	△14.9	△10.7	+10.8

○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163명 (36.8%)**, **'부딪힘' 41명 (9.3%)**, '깔림·뒤집힘' 29명 (6.5%)으로, 전년대비 각각 17명 (△9.4%), 12명 (△22.6%), 8명 (△21.6%) 감소

○ 반면, 화재·폭발, 감전, 중독 등 **'기타' 부문에서 100명 (22.6%)**, '물체에 맞음' 62명 (14.0%)으로 전년대비 각각 16명 (19.0%), 5명 (8.8%) 증가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사고 유형별)≫

구 분		총 계	떨어짐	끼 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기 타
사망자수 (명)	'23.3분기	459	180	48	53	37	57	84
	'24.3분기	443	163	48	41	29	62	100
	증 감	△16	△17	0	△12	△8	+5	+16
	증감율	△3.5	△9.4	0.0	△22.6	△21.6	+8.8	+19.0
사망사고 건 수 (건)	'23.3분기	449	178	48	53	37	57	76
	'24.3분기	411	163	48	39	28	62	71
	증 감	△38	△15	0	△14	△9	+5	△5
	증감율	△8.5	△8.4	0.0	△26.4	△24.3	+8.8	△6.6

○ 지역별로는, 경기 (136명), 경남 (40명), 서울 (37명), 부산 (32명), 전남 (32명), 경북 (31명), **전북 (24명)**, 충북 (22명) 순으로 발생

○ 전년대비 경기 (12명), 전남 (6명), 경남·서울·부산 (3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충남 (△13명), 경북 (△7명), **전북**·대전 (△6명), 인천 (△5명) 등은 감소하였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광역자치단체별)≫

구 분		합계	경기	경남	서울	부산	전남	경북	전북	충북	충남	인천	강원	울산	대구	제주	광주	세종	대전	기타
사망자수 (명)	'23. 3분기	459	124	37	36	29	26	38	30	20	34	25	21	9	9	6	6	3	6	0
	'24. 3분기	443	136	40	37	32	32	31	24	22	21	20	20	10	8	6	3	1	0	0
	증감	△16	+12	+3	+3	+3	+6	△7	△6	+2	△13	△5	△1	+1	△1	0	△3	△2	△6	0
	증감율	△3.5	+9.7	+8.1	+8.3	+10.3	+23.1	△18.4	△20.0	+10.0	△38.2	△20.0	△4.8	+11.1	△11.1	0.0	△50.0	△66.7	△100.0	0.0
사망사고 건수 (건)	'23. 3분기	449	121	35	36	29	26	38	28	19	33	24	21	9	9	6	6	3	6	0
	'24. 3분기	411	114	37	35	30	32	30	24	22	21	20	19	9	8	6	3	1	0	0
	증감	△38	△7	+2	+3	+1	+6	△8	△4	+3	△12	△4	△2	0	△1	0	△3	△2	△6	0
	증감율	△8.5	△5.8	+5.7	+8.3	+3.4	+23.1	△21.1	△14.3	+15.8	△36.4	△16.7	△9.5	0.0	△11.1	0.0	△50.0	△66.7	△100.0	0.0

○ 한편, 도에서 제출한 **'도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9월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전년 동기('23.9.)대비 재해조사 대상사고 사망자 수는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년 대비 6명(33%)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명 감소, '제조업'에서 3명 증가, **'기타' 부문에서 6명 증가**함

≪최근 3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현황(업종별)≫

(단위: 명)

구 분	총 계	건설업	제조업	기 타	중처법 해당
2024.(9.기준)	24	10	8	6	15
2023	35	13	14	8	12
2022	18	13	5	-	7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민안전실)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북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정책 제언 ››

○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

○ 정부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조사를 이행하는 한편, 관계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고 있음

○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전북지역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도는 산업재해로 인한 잇따른 사망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 초기방재를 위한 방재물품 및 장비확보,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이상 계속사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산업재해 예방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함

○ 하지만, 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의 **시행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 보완이 요구됨

○ 일례로, 산업재해 관련 내년도 신규사업인 **『산업재해 예방 교육지원』** 사업은, **도내 5개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연간 1천만원으로 단 50명 규모 정도만 교육**하고자 할 뿐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는 교육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은 **약 2천여 개**로, 도가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1천만원, 50명 규모로는 **사업장별 1명씩 교육한다 단순 측정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선 **40년이 소요**되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 현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 번역**이나 **외국인 강사 채용** 등을 위한 계획은 **전무**하며,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을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는 등,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동떨어진 **단순한 구상**만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대체로 중소·영세업체**인 것, 이에 따라 **안전조치**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인건비와 인력 문제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예산은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에 전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 건수 또한 감소세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일 것임

◉ **정부의 미봉책 수준의 대책**도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지자체도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가짓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①**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②**교육지원·안전장치 구입 지원 등 실질적인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 투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3.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국토교통부)

◇ 성큼 다가온 수소시대,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으로 도시와 수소의 새로운 밑그림 제시

1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시범도시 진단

□ (추진현황) '20년부터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서 시범도시** 조성, '23년부터는 **12개 수소도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확대 추세**

* 1기('23~)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2기('24~)양주, 부안, 광주동구, 3기('25~)울진, 서산, 울산

□ (시범도시 진단) 3곳의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통해 **성공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나 기술적 한계, 한정된 활용 분야 등 보완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도시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수소도시모델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

☞ 수소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와 경쟁력,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Next Level **수소도시로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필요

2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기존 수소도시	수소도시 2.0
개념	**생활권 단위**(3km~10km)에서 **그레이 수소**를 인프라를 통해 **건물, 충전소 등 도시 내 단위사업 수준에서 활용**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광역 단위**에서 **블루·그린 수소를** 차세대 인프라를 통해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 분야에 활용**
대상	**시범도시 3곳 + 실증도시 1곳**	**도시역량과 시너지 가능한 12곳 + α**
특징	**테스트베드 수준의 기반 구축**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태계 구현**

□ 수소생태계 확산을 위한 수소도시 고도화

❶ (친환경 생산 확대) '40년까지 **블루·그린수소 생산 비중 50%로 확대,**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생산, 원자력 수소 등 **지역여건 적극 활용**

❷ (인프라 확충) '40년까지 수소배관 280km 확충, **도시내 10% 에너지 분담 도전**, 지역별 안전운영센터 확충과 중앙 차원의 관리 강화

❸ (활용 확대) **산업**(산단 등), **문화**(문화센터 등), **복지**(실버타운 등) 분야에도 활용하고, 트램, 상용차, UAM 등 **모빌리티 인프라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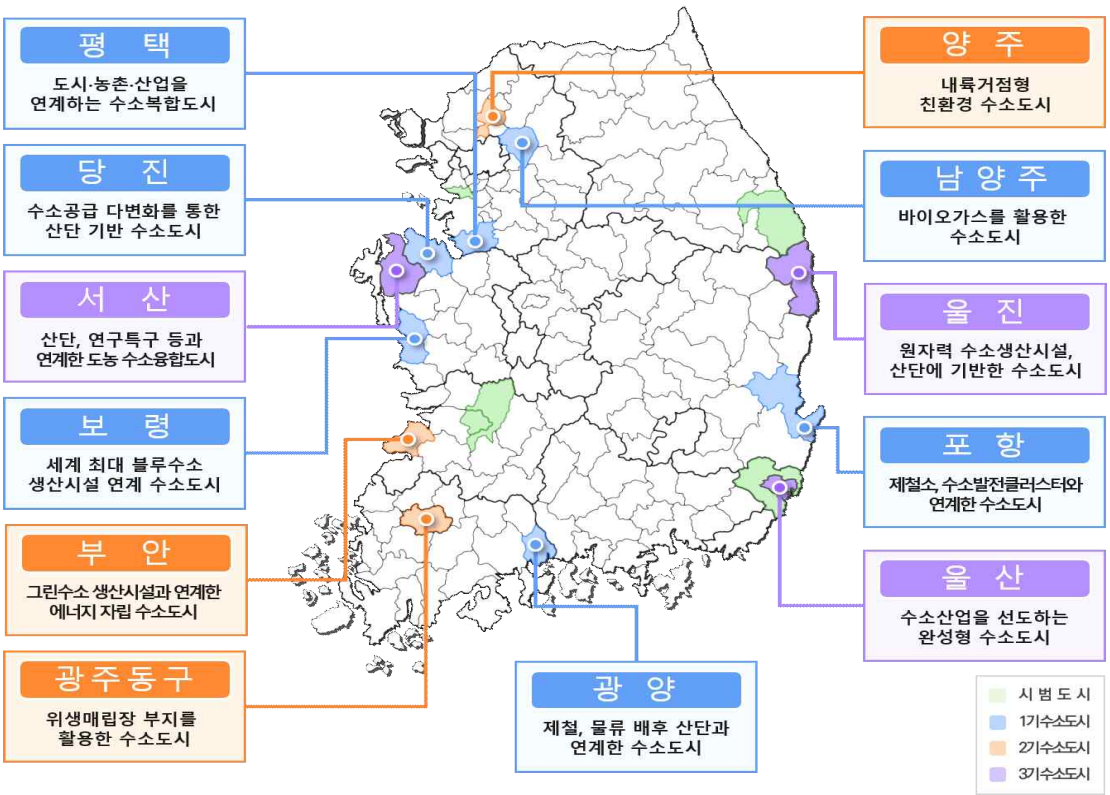
* (기존)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일부 건축물 + 수소차, 수소버스를 위한 수소충전소
→ (개선) 산업, 문화, 복지, 주거 등 모든 건축물 + 수소트램 등 다양한 수소교통 인프라

❹ (광역 연계) **생산이 우수한 지역**과 **주변지역 연계** 등 수소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는 **광역연계형 수소도시모델** 마련(산업부 등 협력)

□ 12대(+α) 수소도시 조성

○ **도시별 수소 역량**(민간 생산시설 등)과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태계 결합**

< 12대 수소도시 조성 >



□ 수소도시 조성기반 강화

❶ (기술개발, 해외진출) **K-수소도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를 기반으로 수소도시 해외진출 전략 모색

< 수소도시 관련 패키지 해외진출 전략(안) >

수소 도시	+	수소 산업단지	+	수소 터미널	+	수소 모빌리티
생산-저장·이송-활용 수소 생태계		수소 특화 산단 계획·설계·운영		수소액화 플랜트, 수소 적·하역 터미널		수소차, 수소상용차, 수소트램 등

❷ (**안전관리**) 생산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안전강화 방안** 마련('25~)

❸ (**수소도시법 제정**) **체계적·효율적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

❹ (**거버넌스**) **중앙부처 간** 연계 정책 및 **협력사업 모델 발굴** 등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청정에너지수소과]

○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2050선도, 그린수소 산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아래 수소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반 구축, 수소충전소 건립 등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수소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 '24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기존 수소도시에서 수소도시 2.0으로 변화된 정책이 반영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태계를 구현하고 있어 **전북자치도만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됨

○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소시범도시('20~'24) 3곳(울산, 전주·완주, 안산)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에서 명시하듯이 "3곳의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통해 성공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나 기술적 한계, 한정된 활용 분야 등 보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수소도시 2.0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수소시범도시의 사업 영역 확장이나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수소시범도시에서 수행한 사업들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온전한 수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 수소시범도시 구축 내역

□ 울산 수소시범도시

주거	율동공공임대(437세대) 연료전지(440kw×3),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연료전지(100kkw) 설치
교통	수소시내버스(12대), 수소차 셰어링(10대) 운영,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연계 구축
인프라	수소배관(10km) 구축, 통합안전운영센터 설치
지역특화	스마트팜 연료전지(10kw) 설치

□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주거	우석대생활관 연료전지(10kw×5), 완주군청 연료전지(10kw×3) 전주자연생태관 연료전지(5kw×3), 완산수영장 연료전지(10kw×4) 설치
교통	수소시내버스(54대), 수소튜브트레일러(3대) 운영
인프라	수소공급기지 구축, 통합안전운영센터 설치
지역특화	수소놀이체험관 구축, 수소드론(3대) 운영

□ 안산 수소시범도시

주거	공동주택(504세대)·단원병원 연료전지(440kw) 설치
교통	수소시내버스(1대) 운영, 수소충전소(4기) 연계 구축
인프라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10km) 구축, 통합안전운영센터 설치
지역특화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4.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 데이터기반 첨단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 등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 피해 구제 강화 등 기술보호 기반 조성

1 추진 배경

□ 주요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로 확보한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화

* '22년 상위 2,500개 기업 R&D 투자액은 1조 2,49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미) 반도체·양자 기술 등 수출통제 대상 지정('24.9), (일) 경제안전보장법 제정('22)

□ 최근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허빅데이터 등 **핵심수단**을 활용한 **기술보호 대책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20~'24.8) 해외 기술유출 시도 97건,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 추산

** ① 영업비밀 침해시 손해배상(5배 可)·금지청구, 징역·벌금 가능, ② '24.上 경찰 송치 기술유출사건 죄종 중 70.3%가 영업비밀 유출 → 기술유출 대응 핵심수단

2 현황 진단

□ (유출 현황)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비중***이 크며, **유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양상

* 분야별 유출현황('20~'24.8) : 반도체40건(41%), 디스플레이 18건(19%), 전기전자 6건(6%)

** 연구인력 이직제안, 국내기업 설립·인력고용, 입수합병 후 이전 등을 통해 유출

□ (대응 현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여전히 취약***하며, **대학·공공연의 기술보호 인식·관리도 미흡****('23년 특허청 실태조사)

*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1.4%만 전담부서·담당인력 보유, 유출시 무대응 비율 32.1%

** 대학·공공연의 54.5%만 연구보안 담당조직·인력 보유, 49.0%만 연구부산물 비밀 관리

□ (인프라 현황)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실효성이 낮고***, 연구인력의 **해외이직도 증가****하는 실정

* 최근 5년간 원고 승소율 : 영업비밀 침해소송 25.6%, 전체 민사소송 55.6%,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앙값('97~'17) : (한) 0.6억원 Vs (미) 65.7억원

** IMD 두뇌유출 지수는 '21년 24위에서 '23년 36위로 하락(순위 낮을수록 유출위험↑)

3 비전 및 추진 과제

【 비 전 】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역동경제 견인

< 기술보호 강화 → 혁신성과 축적 → 산업경쟁력 강화 → 역동경제 실현 >

【 방향 및 목표 】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를 통한 기술보호 강화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 등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	피해구제 강화 등 기술보호 기반 조성

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

❶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 (기술유출 방첩)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24.4)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 포착 → 방첩기관 공유 및 수사 연계**

* 全세계 5.8억여건으로 全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 포함

○ (국가핵심기술 모니터링) 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시** 활용 가능한 **특허 동향 정보***, **권리이전·인력** 정보 등 제공

*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24.8)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도 제공 가능

❷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

○ (기술자문 제공) **첩보·수사 단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기술범죄 성립여부 확인 요청시 **기술유사성 판단*** 결과 제공**('25.上)

* 특허청은 심사·심판관 1,400여명 보유 → 全 기술 분야 기술자문(기밀유지도 가능)

** 법적근거 마련(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 공지·유사 여부 등 자문 근거 및 비밀누설죄 신설

○ (수사 고도화) **기술경찰의 수사력**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등 **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부정경쟁방지법, '25)

❸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

○ (기술보호 강화)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제재***, **영업비밀 재유출 처벌, 신고포상금制**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24.下~'25)

* 브로커의 기술유출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전자적 기술유출 방지) 해킹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명시(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5)

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

❶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

○ (사전예방) 기업 등의 **기술보호 역량제고**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중소·중견기업)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신설(연 40개社)

* (대학·공공연) 대학·공공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및 가이드북 마련·제공

○ (사후대응)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인지** 및 **증거 확보** 지원

* (디지털포렌식) 3주간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현장진단) 유출진단 보고서 즉시 제공

❷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

○ (기술탈취 입증) 거래·교섭시 교환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하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25.上)

* 증거자료의 전자지문 등록 → 증명서 발급 → 원본 인정 추정효 발생

○ (기술탈취 대응)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개편하여 **중기 기술탈취 대응 지원** 확대*(발명진흥법 개정, '25.上)

*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신규 지원, 법률자문 제공 등

❸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

○ **법원 및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조정-집행 연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23) 서울중앙, 수원지법 → ('24) 대전·대구·부산지법 등 조정연계 MOU체결 추진

** 피신청인의 의도적인 조정 불응건에 대해 특허청 수사·행정조사로 연계 등

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

❶ 기술유출·침해 관련 소송법제의 선진화

○ (증거수집)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순차개정)

* (전문가 사실조사) 법관 지정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
(자료보전명령) 법원이 침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

○ (관할집중)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송 관할집중 확대** 추진

* (현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에 적용(민사 본안) →
(개선)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확대(민사 가처분·본안 + 형사)

❷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

○ (국내 이직처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135명) 및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100여명)

*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

○ (직무발명 보상) 직무발명 우수기업 **재인증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24년 250회 → '25년 380회 이상)

*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

❸ 기술보호·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대학·기업·일반인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보호**(변리사 등) 및 **정보보안**(정보보호특성화 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 산업기술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으로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교육 제공

☞ **기술보호**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반의 첨단기술로 성장**하는 **"우리경제의 역동성 발현"** 촉진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최근 기술유출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8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임.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

*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와 손잡고 영업기밀·기술유출 철통 보안 나선다, 보도자료, 2024.11.20.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사범 검거 현황(참고자료)에 따르면 '21년 이후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경찰청에서도 '전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일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결**되었음

○ 같은 조례안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산업보안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의 기술 유출 방지 사업은 '25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중심 전환에 따라 국내외 사이버보안 체계 의무화를 진행중으로 도내 자동차기업 대응 역량 확보하기 위한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전북대 글로컬)'를 시행예정이나 이 사업은 산업기술 보안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음

사업명	2025년 예산편성 요구			
	요 구 액(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300,000	-	300,000	- 미래차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200,000천원 - 전문인력 양성 100,000천원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하여, '24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새로운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며, 전북자치도 역점사업으로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보안을 국가사무로서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정보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구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연도별	국 외	국 내	계	국 외	국 내	계
2011	24	60	84	104	207	311
2012	27	113	140	102	296	398
2013	19	78	97	58	264	322
2014	14	97	111	73	251	324
2015	12	86	98	78	223	301
2016	13	101	114	59	267	326
2017	13	127	140	36	300	336
2018	20	97	117	69	283	352
2019	12	100	112	40	341	381
2020	17	118	135	53	292	345
2021	9	80	89	30	194	224
2022	12	92	104	40	286	326
2023	22	127	149	56	266	322

5.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환경부)

◇ 중장기 관리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함

1 추진배경

○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주요내용

1. 기후변화에 맞춰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 (적응)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지원 확대

-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컨설팅*)'을 확대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추진함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지원, 친환경 벽지 시공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 유해인자 측정, 기초자료(DB) 구축 연구, 환기평가 컨설팅 시범적용 등

○ (감축)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
-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하여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가스연료(LPG, LNG)를 쓰는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함

* 초미세먼지 측정농도, 온·습도, 황사 발생 여부, 차량 운행 횟수 등

** 전기모터 대신 가스연료(LPG, LNG) 엔진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등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저감장치 미부착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

2. 지하역사 · 조리공간 등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 지하역사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지원 효율화·정보제공 확대

- 하루 평균 약 천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임

  * (예시) 오염도·노후도·혼잡도가 모두 높은 역사에 우선지원 → 오염도 증가추세인 역사에 순차지원

  ** (예시) 터널 내 미세먼지를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연계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 향후 민간앱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임

○ 조리매연 단계별 관리체계('측정-저감-관리') 구축

- 조리공간의 단계별 관리체계('측정-저감-관리')를 구축함.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함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을 통해 측정지점 선정시 조리공간 고려

-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 및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할 계획임

** 미세먼지·악취 저감설비 설치지원(환경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교육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고용부)

3. 관련 산업 지원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와 소통망(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 간담회('24)에서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제품인증·지원제도 등 정보획득'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하여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임

  ** 한국의 제안으로 공기청정기의 부유 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제표준 승인 예정('25)

○ 실내공기질 관리지표 개발 추진

-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중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함

4. 실내공기질 관리의 국내외 협력 확대

○ 실내공기질 국제협력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도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가칭)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 구축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할 예정임.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함

  * (초기)일본·중국과의 정책교류 → (확대)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 등과 기술·연구 교류 추진

○ 실내공기질 국내 연구협력 확대

- 아울러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하여 국민생활 밀착형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환기율, 온·습도 등 다양한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영향 연구를 추진함

3 기대효과

○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은 5년간 학교,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루어졌음

* 법적용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지하역사·학교·어린이집 공기정화 설비 설치지원 등

[참고]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별 연평균 농도

구 분	유지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9년 대비)
초미세먼지(㎍/㎥)	35~50	16.0	15.5	15.1	13.2(17.5% 감소)
이산화탄소(ppm)	1,000	597	588	588	503(15.7% 감소)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 탄소 농도의 감소로 실내공기질이 향상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예상됨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생활환경과, 전북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에서는 2020년부터「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음. '24년도에 총 61개소(소규모 어린이집 42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유지기준 6개 항목*에 대한 무료측정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25년도에는 도비 31,000천원을 편성하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 예정임

* 소규모 어린이집(430㎡미만), 노인요양시설(1,000㎡미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 그러나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중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시설의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영세한 시설은 자체 개선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매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컨설팅으로 60개소 정도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환경부에 국비 사업 반영 등을 요청하여 도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 있음

○ 또한 환경산림국에서는 산업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25년도 예산에 총 1,290,000천원(국비 645,000, 도비 119,000, 시군비 397,000, 기타 129,000)을 편성하여 299개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fume)으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식생활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본·추경예산에 유·초·중·고 127개교(원)의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26,437,20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안은 120개교(원), 총 30,866,919천원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지난 9. 27. 의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7조(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따라서 조리실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정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및 조리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참고 1 제5차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비전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선진화

목표 국민들의 실내공기질 정책 만족도 80% 달성

핵심분야	중점과제
1 기후변화에 맞춘 실내공기질 관리	▶ 건강 위해도를 반영한 다중이용시설 관리 ▶ 민감계층 이용시설 맞춤형 지원 ▶ AI 활용, 냉·난방기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2 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관리	▶ 지하역사별 공기질 맞춤형 관리 ▶ 학교 공기질 유지·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 ▶ 조리매연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3 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역량 제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내공기질' 분야 추가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 ▶ 국가측정망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4 실내공기질 관리 협력확대	▶ 아시아 지역 정부간·국제기구 협력 구축 ▶ 실생활 밀착형 연구지원 추진 ▶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참고 2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개요

□ 개요

○ (목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정보제공**

※ 누리집(www.inair.or.kr)과 앱(안드로이드, iOS)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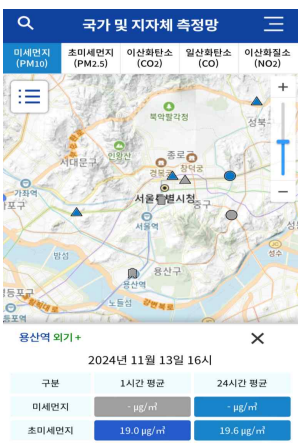
○ (제공정보) **실내공기질 국가측정망*** 측정정보(1시간·24시간),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1시간·24시간), 실내사용 **건축자재 인증현황** 등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자동측정기기(21개 시설군, 158개 기기 운영중, '24.10월)

□ 화면구성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누리집)



국가측정망 정보(앱)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정보(앱)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충청북도)

◇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통한 미래의 출산 가능성 제고

1 추진배경

○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 증가 및 여성의 사회적욕구 상승 등으로 **'가임력 보존법'**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부상

○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지원의 필요성 확대 및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및 **미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 시술 수요 증가**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 전국 의료기관에서 '24. 1. 1. 이후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 '23년 9명, '24년 17명 지원, '25년 30명 지원 확대 (30세 이상,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선정기준**

난소기능	소득	지원인원	재원
난소기능(AMH) 1.5 ng/ml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20명	충북도예산
조건없음 단, 20~29세는 난소기능(AMH) 5 ng/ml이하	**조건없음**	10명	기업후원

※ 소득기준은 지원금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항암치료 등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AMH 기준 없이 지원 가능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

○ **기타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중 지원 불가**

○ **지원절차**

난자 냉동 시술 민원인 ↔ 의료기관	▸ 본인 부담 시술
⇓	
지원금 신청 민원인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
⇓	
지원대상자 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	▸ 자격여부 확인 - 주소지 · 거주기간 · 난소기능 · 소득수준 ▸ 진료여부 확인 - 진료내용·진료비
⇓	
지원금 지급 인구보건복지협회 → 민원인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예산소진시까지

3 기대효과

○ 난자 냉동 시술 지원 사업을 통해, 향후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존으로 난임 부부의 대안 마련 및 **미래의 출산 가능성 보존**

○ 기존의 정부의 난임 정책이 주로 부부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부 정책을 보완하여, **충북도**에서 **미혼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초저출생 대응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건강증진과]

○ 난자냉동 시술은 저출산·만혼화가 심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건강한 난자를 냉동하여 향후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과 난임부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시행**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25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추진될** 예정임. 단,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결혼 여부 무관' 대상자를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임
(생식세포 냉동·초기 1년 보관 비용 등 최대 여성 200만원·남자 30만원 지원)

○ **전북자치도**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게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4년 4인 가구 기준 월 10,314천원)는 기존 '정부형' 으로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에게 '전북형' 사업으로 회당 최대 110만원 추가 2회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전북도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으로('25년 예산안 2억원), **난임 관련 지원사업**(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들이 주로 **'법률혼' 부부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음

○ 최근 발표된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보고서[1]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49세 비혼 여성** 중 난자 동결시술 경험자를 제외한 **790명 중 51.4%**가 **'난자동결 시술을 생각해 본 적 있다'** 고 응답함.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 **'미혼' 여성을 포함**하고 있음

1) [여성가족 정책리뷰]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4.10.)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지금의 초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북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사례처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을 난임 부부에게 한정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혼 여성, 소득·나이 기준 폐지 등** 대상 확대가 요구됨

○ **'가임력 보존술'**은 **미래 시점까지 현재의 수태력을 보존**하고자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지원정책과는 차이가 있음. 최근 **난자동결 보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음(「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세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등)

○ 이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학적·사회적 사유의 난자동결을 모두 허용 및 일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본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도 함

○ 그동안 '난자(정자) 냉동시술'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경시 우려, 난자동결 시술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타당한지 등 논란들이 있어 왔으나, 기존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정책들도 변화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사회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술이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미혼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편임. 난자 냉동 시술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평균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2)]

2) 이슈와논점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4.03.)

참고1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시행 2025. 1. 1.] [2024. 5.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를 채취·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난자동결”이란 여성의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이상의 여성
3. 질병·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2 2024년 충청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2.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시는 '24.11.26.부터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음**

1 추진배경

○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 및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 첨단기술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행시작일 : '24. 11. 26(화) ※ 올해 6월부터 시운행

○ 시작시간 : 새벽 3시 30분

○ 운행구간 : 도봉산 광역환승센터 출발 영등포역까지 25.7km

○ 운 행 일 : 평일(월~금)만 운행

○ 운행시간 확인 방법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를 통한 운행 시간 확인
- 네이버·카카오 '새벽 A160' 또는 'A160' 검색을 통하여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확인 가능

○ 요금 : 무료(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 예정 / 금액 1,200원으로 전망)

○ 소요예산 : 11억원(국비 5억 5천만 원, 서울시 5억 5천만 원)

○ 운행업체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자율주행 전문 업체)

○ 승차 시 주의사항

- **당분간 무료**이나,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 후 탑승
- **안전상 입석이 금지**되며,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착용
- 운행 중에는 이동을 삼가고, 반드시 정차 후 안전하게 하차
-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상 운행이 중지 될 수 있으니, 탑승 전 버스도착 안내단말기(BIT), 네이버 등 포털에서 실제 운행여부를 꼭 확인 필요
- 만차 시에는 하차 승객이 없을 경우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

3 기대효과

○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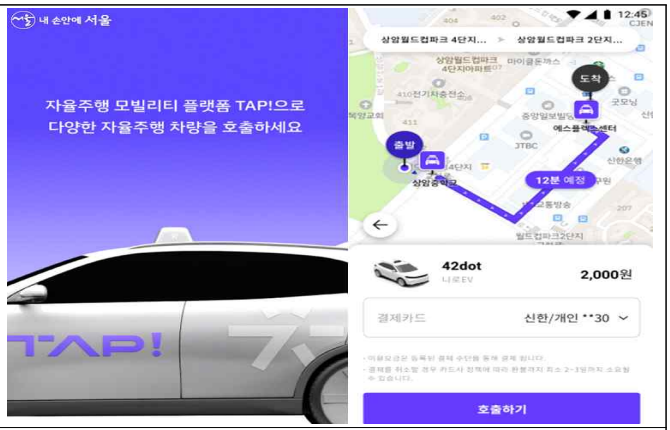
○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배려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교통정책과, 전환산업과)

○ 서울시는 '22년 10월부터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24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사업을 시작하였음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

<table>
<tr><td>
</td><td>
</td></tr>
<tr><td>자율주행차</td><td>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td></tr>
<tr><td>
</td><td>
</td></tr>
<tr><td>상암 1 노선</td><td>상암 2 노선</td></tr>
</table>

※ 이용요금 1회 2,000원

※ 자율차 이용방법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하고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음

○ '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는 42곳이 있고 그중 전북자치도에는 3곳(군산, 익산, 광역운송망(군산~전주))이 있음

○ 군산 새만금지역에서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기반 조성사업'(총사업비 42,985백만원 / 국비 24,195,도비 7,350, 시비 7,350, 기타 4,000)을 시행하면서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임. 새만금지역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부터 검증 및 실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상용차에 특화 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 새만금자율주행시험(1단계(기능검증),'15~'18) →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2단계(성능검증), '20~'21) →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3단계(기술실증), '22~'26)

○ 익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여객용 자율주행차 사업을 올해 시작하여 '25년 하반기에 실증 운행을 예정하고 있음.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맞춰 대응하고 있음

○ 군산 새만금 및 광역운송망(군산~전주) 지구에서는 상용차 자율주행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상용차 자율주행 관련 업계의 집적 유도 및 화물·물류 업계의 자율운송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

○ 또한 익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승용자율주행차 부문에서도 전북자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늦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참고 1 A160 운행 개요

ㅇ 노선번호 : A160

ㅇ 대　　수 : 1대 / 차　　량 :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ㅇ 요　　금 : 무료(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반드시 태그 필요)

ㅇ 좌　　석 : 총 22석(장애인석 포함 - 입석금지)

ㅇ 운행시간 : 03:30분(도봉산광역환승센터 출발) ~ / 운행횟수 : 왕복 1회

ㅇ 운행구간 :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 – 편도기준 25.7km



참고 2 A160 이미지


새벽A160 도봉산역↔영등포역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새벽동행


SEOUL AUTONOMOUS BUS
160
새벽동행

참고 3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지정('23.11)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양적 성과가 나타난 만큼, ①**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 운영**, ②**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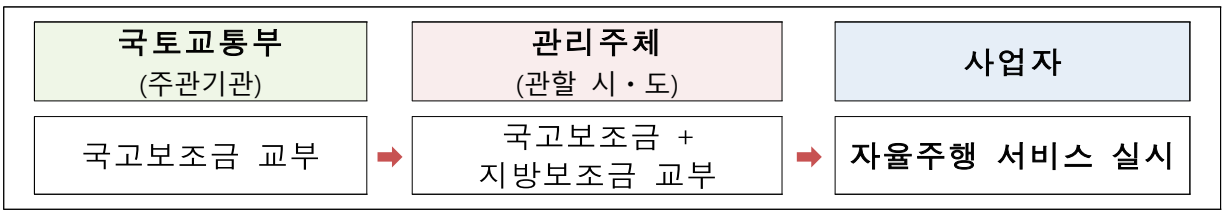
○ (**유형/예산**) **지자체 자본보조**(5:5 매칭형) / **총 20억원**

○ (**지원대상**)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 (**지원내용**)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운영비***

* 자율차 구매·임차 및 운영비, 전용 앱·C-ITS 등 서비스 관련 유무형 인프라 설치·운영비 등

○ (**사업구조**) **국토부**가 시범운행지구 관할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50%)을 더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시



□ '24년 지원사업

	국비 지원금액	주요 사업계획
서울	5.5억원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중앙차로), **주간 자율주행택시**(상암),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외국인 관광융합형** 자율주행버스(청계천) 등
강원	4억원	**운수사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을버스
대구	4억원	**도심**(진천역)-**부도심**(테크노폴리스)**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 산단 내 수요응답형 등
충남	2.5억원	자율차를 활용하여 **주정차 단속**, **방범순찰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체험용 차량**도 운영
제주	2억원	**공항-도심 연결형**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제주), **교통 불편지역** 내 수요응답형(첨단과학기술단지)
전남	2억원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순천)

참고 4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42곳('24.12.기준)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최초 지정시기
1	서울	상암	· 서울 상암동 일원(6.6K㎡)	'20.12(1차)
2	서울	강남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22.6(3차)
3	서울	청계천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22.6(3차)
4	서울	청와대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23.6(5차)
5	서울	여의도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23.6(5차)
6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97km)	'23.6(5차)
7	서울	동작	· 동작구 상도1동 일원(1.62km)	'24.12(8차)
8	부산	오시리아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22.11(4차)
9	대구	산단-서대구역	· 국가산단-서대구역 등(19.3㎢, 40.8km)	'20.12(1차)
10	대구	동성로	· 대구 중구 일원(4.55km)	'23.11(6차)
11	광주	평동산단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20.12(1차)
12	충청권	충북·세종·대전	· 충북↔세종↔대전 BRT노선(113km)	'20.12(1차)
13	세종	상상지구	· BRT 노선(22.9km), 1~4생활권(27.12㎢)	'20.12(1차)
14	경기	판교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2.69km)	'21.4(2차)
15	경기	시흥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22.6(3차)
16	경기	안양	· 안양시 일원(10.6km)	'23.11(6차)
17	경기	수원광교	·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24.12(8차)
18	경기	화성 리빙랩	· 서부권 일원(30.1㎢+21.4km)	'24.12(8차)
19	경기	용인동백	·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24.12(8차)
20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23.6(5차)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최초 지정시기
21	충남	내포신도시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23.6(5차)
22	충남	당진	· 당진 시내 일원(7.3km)	'24.6(7차)
23	충남	천안	· 천안아산KTX역 일원(5.9km)	'24.12(8차)
24	**전북**	**군산**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22.6(3차)**
25	**전북**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22.11(4차)**
26	**전북**	**광역운송망**	**· 전라북도 군산시-전주시 일원(61.3km)**	**'24.6(7차)**
27	전남	순천	· 순천역~국가정원(9.8km)	'22.6(3차)
28	전남	해남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	'23.11(6차)
29	경북	도청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11.5km)	'23.6(5차)
30	경북	경주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	'23.11(6차)
31	경남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23.6(5차)
32	경남	사천	· 사천시 일원(7.3㎞)	'23.11(6차)
33	강원	강릉	· 강릉시 일원(53.5km)	'22.6(3차)
34	강원	원주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22.6(3차)
35	제주	시청-서귀포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 69.8km)	'20.12(1차)
36	제주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23.6(5차)
37	인천	구월	· 인천시청 일원(4.2km)	'23.11(6차)
38	인천	송도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23.11(6차)
39	인천	영종	·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3.65km)	'23.11(6차)
40	인천	국제공항	· 국제공항 일원(17km)	'23.11(6차)
41	울산	테크노산단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23.11(6차)
42	고속도로		· 경부선 등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358km)	'24.12(8차)

참고 5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군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ㅇ 명칭 : 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Go-Gunsan)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ㅇ 관할 시·도 : 전라북도 군산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일원 (고군산군도)	15.6km
A	고군산 연결도로(장자회전교차로~신시1사거리)	8.8km
B	고군산군도 내 지선(장자선, 선유선, 무녀선, 신시선)	6.8km
2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군산국가2산업단지)	2.8㎢, 11.0km
3	새만금 방조제 도로 및 하부 테스트베드 도로	15.0km
합계		2.8㎢, 41.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ㅇ 지정목적
     - –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기여
     - – 군산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 – 기타 자율주행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참고 6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북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관할 시·도 : 전북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군산항 제1부두~군산세관통관장(군산물류지원센터)~전주물류센터	54.0km
2	자율운송 실증지원센터 ~엑스포사거리	4.4km
3	대야교차로(진입 램프 시작점)~동군산TG입구 앞(금만로 종단)	1.6km
4	조촌교차로~전주TG입구 앞(동부대로 종단)	1.3km
계		61.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목적 : 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자율운송 상용차 핵심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및 사업 추진, ② 대규모 국가산단·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자율협력주행 확충 예정인 직선구간에서 화물·물류운송 지역 거점 연계를 위한 자율운송 서비스 및 기술 실증 지원
   ○ 지정기간 : '24. 6. 2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 화물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063-280-4447), 미래산업국 주력산업과(063-280-2187)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1호 중 발췌>

참고 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명칭 :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관할 시·도 : 전라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익산역 서부광장 ~ 배산체육공원)	2.9km
2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익산역 환승장 ~ 익산고속버스터미널)	1.6km
3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익산역 환승장 ~ 원광대학교,병원)	3.2km
4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익산역 환승장 ~ 전북대학교)	2.2km(구간3과 0.2km 중복)
5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익산역 동부광장 ~ 역골주차장)	1.8km(구간1과 0.6km 중복)
계		10.7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자율주행 서비스·실증 모델
  - 도심순환 셔틀버스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 시범운행지구 일원
  - 도심순환 셔틀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 한정면허 발급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도심순환 셔틀버스	도심에서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3.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등(서울특별시)

◇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추가로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여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지원함

1 추진배경

○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어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거리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대　　상 :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 절　　차 : 서울시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험금 지급 방법 :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

○ 보장항목

-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상해에 의한 사망, 후유장해 최대 5백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0~50만원
-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백만원까지 보장

※ 안전물품 추가지원

①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 ② 야광조끼(1,558개), ③ 안전모(1,141개), ④ 리어카 부착 조명(871개)



① 경량 리어카



② 야광 조끼



③ 안전모



④ 리어카 부착 조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 '24년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총 4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북자치도는 1,917명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음. '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폐지 수집 노인으로 확인된 인원은 14,831명이고 전북자치도의 폐지 수집 노인은 698명으로 4.71%를 차지하고 있음

○ '23년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25,329명이고, 전북자치도 인구는 1,754,757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음. 대한민국에서 전북자치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폐지수집 인구의 비율은 1.29% 높은 상황임

< 시도별 폐지수집노인 추정치 대비 평균 발굴인원 현황('24. 5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추정 인원(A)	42,000	4,515	3,062	2,199	2,293	1,126	1,215	872	165	10,203	1,836	1,697	2,075	1,917	1,905	3,382	3,154	387
발굴 인원(B)	14,831	2,530	1,280	1,172	885	616	405	302	24	2,511	420	474	499	698	606	788	1,540	83
비율 (B/A)	35.3	54.9	42.1	53.3	38.2	54.5	29.8	34.1	13.9	25.1	19.3	27.0	20.3	36.4	32.0	22.4	42.5	19.9

<출처 : 보건복지부>

○ 폐지수집 노인이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23년 1천명의 설문조사에서 6.3%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답했음[3)]

○ 전북자치도에서도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위로금 및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함

3) SBS, 2024.11.23. 차도로 다니다 '쾅'…폐지 수집 노인 잇단 사고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서울시처럼 폐지수집 노인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폐지수집 노인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700여명 정도이고, 보건복지부의 '24년 시도별 폐지수집노인 추정 인원은 1,917명으로 1,200명 정도 차이가 남. 폐지수집노인 중 안전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함

참고 1 전북특별자치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2023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안)

시군명	사업량(인)	총사업비(천원)			비 고
		합계	도비 (30%)	시군비 (70%)	
합 계	703	20,000	6,000	14,000	
전주시	238	6,771	2,031	4,740	
군산시	225	6,401	1,920	4,481	
익산시	79	2,248	674	1,573	
정읍시	22	626	188	438	※ 재원별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남원시	45	1,280	384	896	
김제시	17	484	145	339	※ 사업비 배정근거 - 2022년 9월 재활용품 수집인 인원 조사
완주군	4	114	34	80	
진안군	12	341	102	239	
무주군	5	142	43	100	※ 1인당 지원금액 - 28,400원
장수군	10	285	85	199	
임실군	12	341	102	239	
순창군	2	57	17	40	
고창군	22	626	188	438	
부안군	10	285	85	199	

< 출처 : 탄소중립정책과 >

4. 공영장례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 **유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빈소 마련과 일체의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

1 추진배경

○ 현대사회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부산시 무연고 사망자 수 : '21년 399명, '22년 526명, '23년 619명

○ 부산시와 구·군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全 구·군, 시설관리공단, 한국장례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연대와 배려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주요내용

○ 존엄한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업무 매뉴얼'을 각 기관에 보급하고,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영락공원 내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무료로 운영

○ 시의 공영장례 서비스 홍보를 위해 BI (Brand Identity) 제작 및 시민 대상 홍보 리플릿도 제작·배포

○ '23년 전국 최초로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 통일된 '공영장례 부고란' 개설을 통해 관심있는 시민들이 공영장례 시 추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장례 진행시 매뉴얼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례가 형식에만 그치지 않도록 3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협업해 교육생들이 공영장례 의식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더불어,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우수사례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이후 '24년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실효적인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있음

< 공영장례 3중 협력체계 개요 >

구 분	역 할
부산시·구군·시설공단	- 공영장례 매뉴얼에 맞는 공영장례 업무 추진 -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장례지도사교육기관	- 3개 교육기관 교육생 공영장례 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 - 공영장례 장례 의식 보조 및 모니터링 등
부산종교인평화회의	- 6개 종단별 공영장례 추모의식 진행 -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사망자 발생시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 전용 빈소에서 장례 진행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 이용 절차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전북자치도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은 도내 시·군에서만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북	60명	70명	80명	110명	123명

※ 출처 :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 도내 '23년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9년 대비 무연고 시신은 1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매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 될 경우 공고 후 화장 처리하고 5년간 매장 또는 봉안시설로 안치됨 (5년 경과 후 유택동산 또는 자연장 안치)

- 무연고 사망자 인계 (병원·경찰) → 사망자 신원확인 및 연고자 조사(시·군) → 연고자 확인시 시신 인계 /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시 공고 (일간지 및 시군 홈페이지) 후 화장처리 (시·군) → 매장 또는 봉안시설 안치 (5년) → 5년 경과시 유택동산 (유골을 뿌리는 장소) 또는 자연장 처리

○ 하지만, 도내에서는 공영장례의 표준 절차 등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공영장례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군별 장례 절차가 일률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익산의 경우 무연고 사망이 확인되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시신을 공설 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익산시민은 정수원으로, 관외자는 김제 평화원으로 옮겨 안치하고 있고,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익산시가 책정한 무연고자 장례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으로, 이 예산으로는 사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빈소 등 장례의식까지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작년 6월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만큼 도에서도 공영장례 비용 예산을 시·군과 매칭하여 편성하고,

○ 공영장례 표준 절차 마련과 동시에 일률적인 장례 매뉴얼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존엄한 이별'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인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는다는 메시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전북자치도에서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 부산광역시 3중 협력체계 사업 개요

□ 부산시·구·군·공단 상호협력 추진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구·군·공단 지도점검

- **(부산광역시)** 지도점검 추진
- **(16개 구·군·공단)**
  - 장례 진행 1일전 부고 게시 (구·군 및 영락공원 홈페이지)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적극 활용 (예산 절감)
  -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제물상차림·시간 엄수 등)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상호협력 추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례지도사교육생이 장례식 참여, 현장실습 및 장례 보조 역할

- **(보건복지부)** 현장실습 인정 검토 완료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모니터링 체계 공유 : 구군 등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 현장실습교육생 (이론·실기수료) : 현장실습·장례 보조 역할 진행
  - 대학생·자격수료자 : 자원봉사자·현장체험자로 활용

※ 3개 기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호협력 추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종교단체가 장례식 참여, 고인에 대한 추모 등 종교의식 진행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추모의식 체계 공유 : 구군 등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 종교확인이 가능한 경우 :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모의식 진행
  - 종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매월 지정된 종교단체에서 추모의식 진행

○ 공영장례 추모의식 순서

성공회(7월)	⇨	원불교(8월)	⇨	천주교(9월)	⇨	천도교(10월)	⇨	유교(11월)	⇨	불교(12월)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대표회장
박동신 주교		강덕제 교감		손삼석 주교		박차귀 교구장		이방호 전교		정산스님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2023년 국세 수입 감소로 국세 세수 추계 결과와 차이가 나자,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 7조 1,689억 원을 미교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

◇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당해연도 미교부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준수하고,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논의 배경

○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짐

○ 중앙정부는 2022년에 예산 편성했던 2023년도 보통교부세 중에서 7조 1,689억 원을 교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당초예산액보다 덜 받게 되었음

□ 보통교부세 교부 시기와 법적근거

○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되, 국세가 줄어들면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

1. 보통교부세 규모

○ 지방재정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보통교부세가 지방세의 절반 정도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상당함.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최종교부액을 보면 2023년에 크게 감소하였음

○ 2023년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액(66조 6,446억 원)보다 12%(7조 1,249억 원) 감소한 59조 5,197억 원이 최종적으로 교부되었음. 2023년 보통교부세의 자금 미배정액이 7조 1,689억 원이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시(2조 7,946억 원)와 군(2조3,390억 원)의 자금 미배정액이 많았음

[표 1]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단위: 억 원)

연도	보통교부세	지방세	연도	보통교부세	지방세
'15	321,762	709,778	'20	449,265	1,020,488
'16	350,237	755,317	'21	513,318	1,127,984
'17	410,323	804,091	'22	704,142	1,185,707
'18	452,118	843,183	'23	595,197	1,106,155
'19	526,028	904,604	'24	598,439	1,107,331

※주: 보통교부세 2023년까지 최종교부액, 2024년 당초예산액.
※주: 지방세 2022년까지 결산액, 2023년 최종예산액, 2024년 당초예산액.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산정해설』,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각연도

[표 2] 2023년 보통교부세 최종 교부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		정산분	23년 최종 교부액
	당초 예산액	자금 미배정액		
특별시	1,554	0	0	1,554
광역시	78,018	-8,435	52	69,635
세종시	1,257	-136	1	1,122
도	90,763	-9,631	59	81,191
제주도	20,003	-2,151	13	17,865
시	258,615	-27,946	172	230,841
군	216,236	-23,390	144	192,990
합계	666,446	-71,689	440	595,197

※주: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는 교부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24, p.9.

2. 보통교부세 세부 교부내역

○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2022년 최종교부액(A), 2023년 최종교부액(B), A와 B의 차액의 비율(C)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표 3]에 정리하였음.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에 2022년보다 더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표 3]과 같음

○ 첫째, 기초자치단체인 시 75개 중에서 2022년 최종교부액(A)과 2023년 최종교부액(B)의 차액의 비율(C)이 큰 지역은 평택시(-35.66%), 성남시(-29.57%), 화성시(-28.81%), 안양시(-26.26%), 포천시(-23.61%) 등의 순서였음

○ 둘째, 기초자치단체인 군 82개 중에서 2022년 최종교부액(A)과 2023년 최종교부액(B)의 차액의 비율(C)이 큰 지역은 경남 고성군(-25.05%), 고흥군(-22.92%), 영암군(-22.83%), 가평군(-21.82%), 음성군(-20.81%) 등의 순서였음

[표 3]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 사례

(단위: 억 원, %)

구분	지자체명	22년 최종 교부액 (A)	23년 최종 교부액 (B)	A와 B의 차액의 비율(C)	22년 지방세	23년 재정자립도
시	경기 평택시	1,716	1,104	-35.66	15,750	47.10
	경기 성남시	186	131	-29.57	27,039	63.40
	경기 화성시	59	42	-28.81	26,476	61.10
	경기 안양시	1,584	1,168	-26.26	8,483	46.90
	경기 포천시	3,139	2,398	-23.61	3,348	26.90
군	경남 고성군	2,910	2,181	-25.05	841	15.90
	전남 고흥군	4,922	3,794	-22.92	613	10.80
	전남 영암군	3,613	2,788	-22.83	913	11.10
	경기 가평군	1,581	1,236	-21.82	1,497	20.70
	충북 음성군	2,446	1,937	-20.81	2,615	25.30
재정자립도 열악	전남 구례군	2,145	1,709	-20.33	266	7.70
	경북 의성군	4,569	3,657	-19.96	536	9.30
	전남 해남군	5,210	4,217	-19.06	1,010	9.60
	전남 신안군	4,285	3,469	-19.04	891	7.80
	강원 고성군	2,107	1,719	-18.41	483	9.80

※주: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액이며,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연도.

○ 셋째,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열악한 지역 중에서 2022년 최종교부액(A)과 2023년 최종교부액(B)의 차액의 비율(C)이 큰 지역은 구례군(-20.33%), 의성군(-19.96%), 해남군(-19.06%), 신안군(-19.04%), 강원 고성군(-18.41%) 등의 순서였음.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지방세보다 큰 지역은 회계연도 도중에 보통교부세가 덜 교부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됨

□ 쟁점사항

1. 「헌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

○ 2023년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음. 2023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2년 말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지방예산을 편성·집행하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임

○ 둘째,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말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음.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적게 교부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는 지적임

○ 셋째, 「지방교부세법」은 추가경정예산을 교부세 증감(增減)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초 확정된 보통교부세 금액에서 일부를 삭감하였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음

2.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집행(불용)이라는 의견

○ 2023년도 보통교부세 중 일부를 미교부한 것은 재정당국이 2023년 9월에 국세 세수를 재추계한 후, 교부세 자금을 미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당해연도 교부세 예산을 미집행(불용)한 적법한 절차라는 설명이 있음

○ 2023년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예산 불용을 통해 당해연도의 보통교부세 중 일부를 미교부한 것이므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임. 또한, 2023년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임

○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배정 유보 대상은 “정부재정사업”일 뿐 보통교부세와 같은 법정 의무지출도 예산배정 유보 대상인지는 불분명하고, 법률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재정당국의 예산배정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 2023년에 중앙정부가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음. 이들은 중앙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2023년 본예산으로 확정한 보통교부세 금액 그대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음

○ 국세 세수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감액하려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확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

3. 제22대 국회의 관련 개정법률안

○ 제22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대 국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의안번호)	내 용
임광현 의원	24.8.29. (2203359)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성해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함
정춘생 의원	24.10.4. (2204544)	계상된 교부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당해연도에 감액할 수 없음

□ 향후 개선과제

1.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방지책 마련

○ 보통교부세가 당해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짐

2.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마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보다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상당한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임

3.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 준수

○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액 그대로를 집행해야 할 것임. 즉, 보통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할 것임

4.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 향후 정부가 국세 세수 추계 방법을 공개하거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세수 추계 작업을 하는 등, 국세 세수 추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 연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3.06.))

≪ 연구요약 ≫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2.5%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동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비혼출산율은 약 42%로 프랑스의 경우 약 62.2%, 멕시코 70.45로 비혼 출생 비율이 높음

◇ 단, 비혼 인구가 비혼 가정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있으며, 비혼 출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라는 정책을 제안함

※ 본 내용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2.1 세미나('23.06.20.)>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의 연구자료를 요약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초저출산국**으로 자리매김함. 비혼화·만혼화가 가속화되며 30대 미혼율은 최근 40%를 넘어섬

○ 동일한 혼인율 감소를 경험한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혼가정이 빠르게 확산**하며, 혼인 가구 감소의 공백을 메꾸어 오고 있음. 다수의 OECD 국가가 '**비혼가정 등록제***'를 운영하며,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비혼(동반)가정 등록제 :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예: 병원수술 동의서 작성 시 법적 배우자 인정, 각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가능한 별산제 적용, 동거인의 가족과는 친인척 관계 미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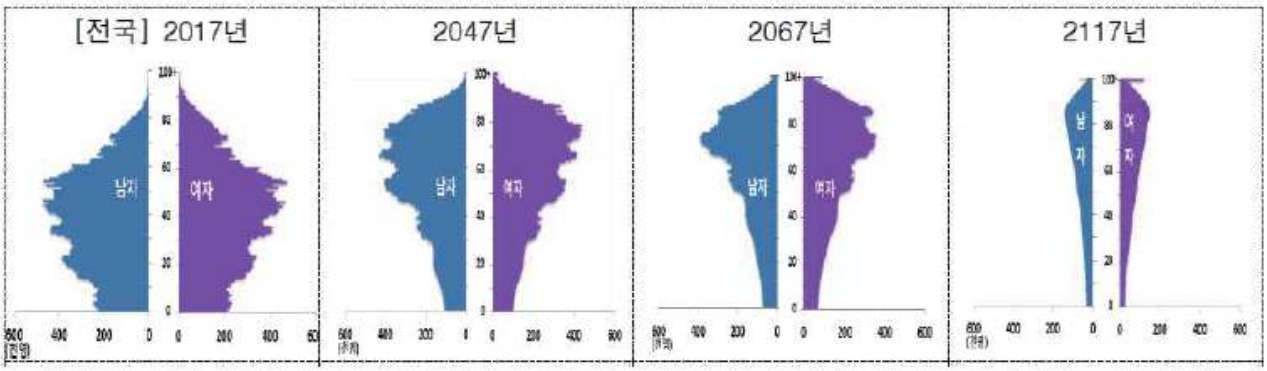
○ 근래 **OECD 내 출산의 약 40%가 혼외출산**이며, 이들 비혼 가정의 출산은 출산율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이 혼인가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혼인율 급격한 하락이 곧 출산율 급락으로 직결되고 있음. **비혼 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 포용**함으로써, 각종 정책적 배려와 복지 혜택 확충을 통해 출산과 양육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제1절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의 가속화

○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2020년부터 시작**됨. [그림 1]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역호리병' 형태의 기형적인 인구피라미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단 한 세대 후인 2047년의 추계에 따르면, 미성년 인구는 더욱 약소한 수준으로 전락함

[그림 1] 향후 백년 간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17~2117년



출처: 감사원(2020),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서, 주거비용 보조, 영아수당 지급, 돌봄체계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이 모두 망라되었으나, 과연 현재의 하향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임

○ **제1~3차 기본계획 기간(2006~2020년)에 걸쳐 무려 200조원 가량의 저출산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1.3명에서 0.7명대로 추락**하였음이 이를 방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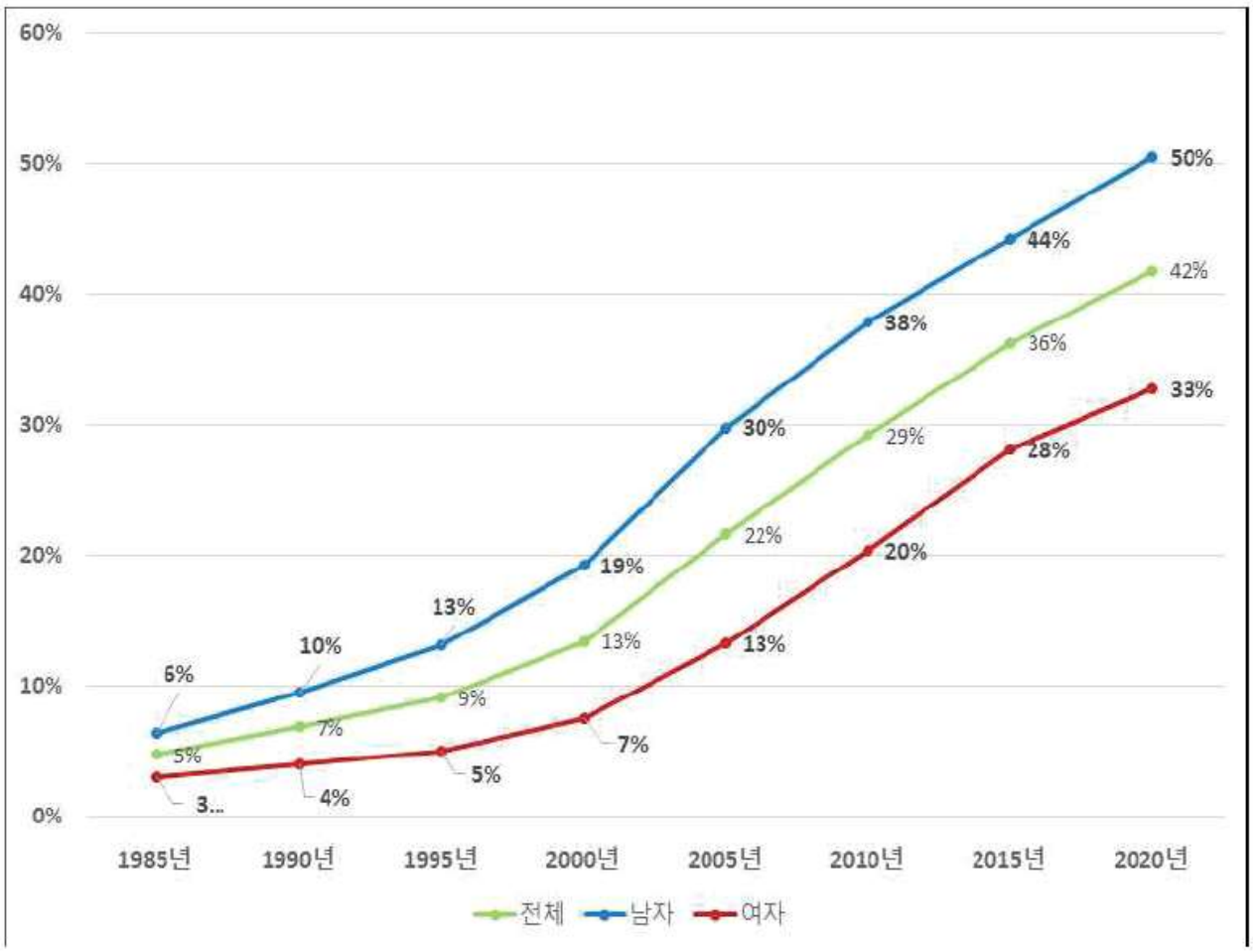
○ 본 연구자가 참여했던, 한 저출산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출산의향조사'[4]에서,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한 물음에 **미혼여성(만35세 이하)**의 무려 **62.5%**가 **'출산의향이 없다'**고 대답함

4) 만 25세~45세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응답자의 구성은 기혼자 482명과 미혼자 687명 등 포함(강동수 외, 2020)

○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80년~90년대 당시의 젊은 세대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큼. 기성세대의 상식과 제도, 관습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와 왜 이처럼 차이가 큰지 이해할 수 없음

○ [그림 2] 정리된 30대 미혼율의 최근 추이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청년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함. 당시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단 6% 안팎에 그쳤지만, **2020년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무려 **50.5%**에 다다름. 같은 기간의 **30대 여성의 미혼율도 약 3%에서 32.8%**로 올라섰음. 특히 **30대 여성들의 미혼율 상승세**는 2000년의 7.5%와 비교하여 **약 5배가량 폭증**함

[그림 2] 우리나라 30대 인구의 미혼율 추이: 1985~2020년



자료: 통계청, 「국민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은 연간 혼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함. 연간 40만 건에 이르던 혼인 건수는 2000년대 들어 연간 줄곧 30~35만 건을 유지해 왔으나, 2016년 이후 30만 건 아래로 추락함. 2022년의 혼인 건수는 단 19.2만 건에 그침

○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이 약 3~4년 전의 혼인 건수를 반영한다면, 이후 약 20% 이상의 혼인 건수의 감소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3~4년 뒤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결혼 5년 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15년 12.9%에서(신혼부부통계, 통계청), **2021년 집계**에서는 무려 **22.5%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늦어진 결혼과 더 늦어진 출산, 혼인 감소와 이혼 증대, 무자녀 가구 확산 등 이 모든 변화가 초저출산 사태에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더함

제2절 성별 경제활동 변화와 비혼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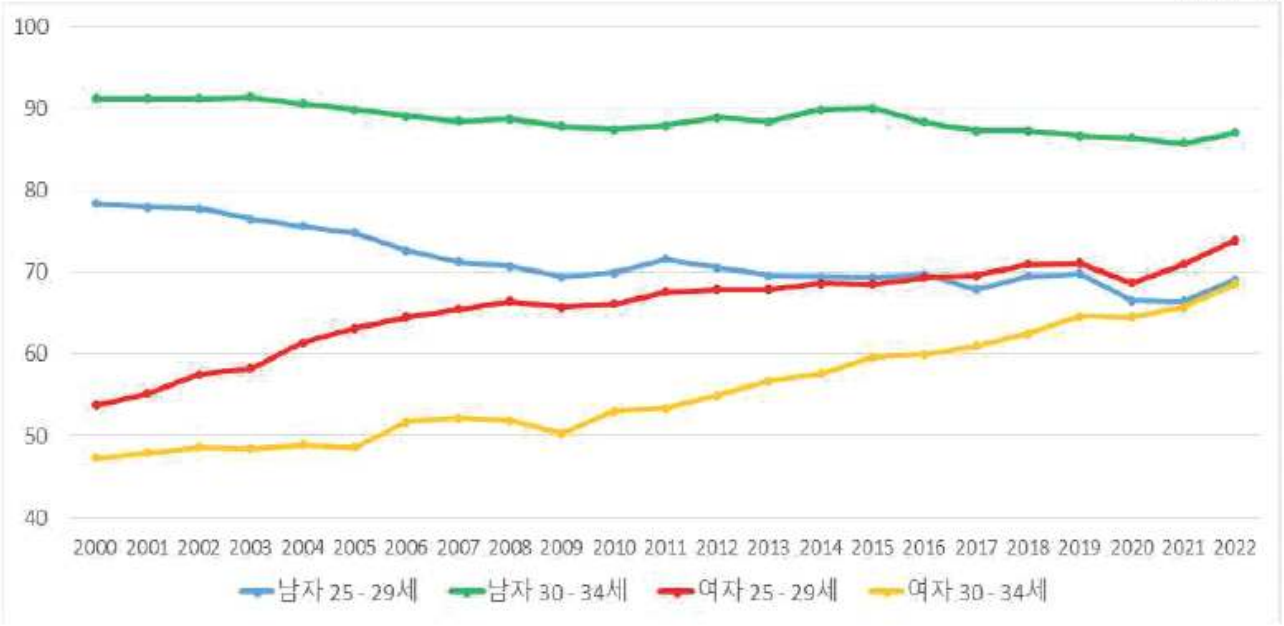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20~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비약적으로 상승함. [그림4]를 보면, 2000년대 53.7%에 그치던 만 25~29세 여성들의 고용률은 **최근 73.9%**에 이르렀으며, 지난 20년 새 무려 20%p 오름.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기간 해당 연령대 남성들의 고용률**은 **약 9% 하락**함

○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오히려 남성의 고용률을 앞서기 시작하여, 2022년 무려 5%p가량 앞서며,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증가는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전통적 가족문화에 근본적 균열을 야기하였음. 청년층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우위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 가족상이 무색해져 버림

[그림 4]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변화: 2000~2020년

(단위: %)



○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거추장스러운 유물로 인식되는 가운데, 결혼을 거부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비혼 인구의 증가는 이미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며, 이에 따라 가정 내 직장인 남편과 가정주부 아내로 양분하던 성역할 또한 무색해짐

○ OECD 주요국에서는 혼인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비혼 독신뿐 아니라, 소위 '비혼 가정' 역시 꾸준히 증가함. 어느새 **비혼 상태의 출산이 전체 OECD 출산의 40%**에 다다름. 프랑스, 스웨덴 등 비혼 출산이 전체의 과반을 넘는 국가도 등장함

○ 우리 사회 역시 서구에서와 같이, 향후 혼인 감소세 및 비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돌이키기는 힘들 것임. 서구의 경험과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비혼 인구는 선뜻 출산과 양육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점임. 몇 년 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이를 비난하는 일각의 여론**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줌

○ 비혼자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제도적 · 문화적 불편과 당혹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함. 비혼 인구의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면, 격려하고 돕는 것이 변화하는 세태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며, **혼인과 비혼 간의 이분법적 사고 역시 경계**할 대상임

제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변화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30%를 넘어섬. 2000년 15.5%, 2015년 27.2%에 다다랐고, 지난 2020년 조사에서 31.7%를 기록함. 1인 및 2인 가구의 합은 2015년에 이미 국내 일반 가구의 과반을 차지함

○ 우리나라 가족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만혼화·비혼화 등 구체적인 변화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 스웨덴 등 변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비혼 가정, 혼외출산 등** 현상을 전통적 가족의 '해체'로 여기기보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봄

○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저변의 빠른 인식 변화가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정 및 법률적 체계는 과거를 답습하는 경직된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❶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변화

여성가족부의 지난 세 차례(2010년, 2015년, 2020년)의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고찰해 보면,

- 다양한 가족 양태에 대한 동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그림 6]에서 보는 거와 같이, 2015년과 2020년 조사 결과를 비교 시, 소위 '정상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이들 네 가족 양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5년 새 크게 달라졌음. 가장 두드러진 인식변화는 **'혼인 후 무자녀' 및 '비혼출산'에 관한 동의 비율**에서 찾아볼 수 있음. **해당 5년 새 무려 7%p나 증가**함

[그림 6] 다양한 가족 양태에 대한 수용성(동의 비율) 변화



주: '15년 조사항목은 '~~해도 괜찮다' 등 좀 더 허용적인 문항이었으며, '20년 조사항목은 '~~에 대해 동의한다' 등 보다 객관적인 의견 조사 형태였음을 감안할 필요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보도자료(2021.5.27.)

* 2015년 5,018가구, 2020년 10,977가구 대상, 해당 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설문에 참여함

- '**비혼출산**(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 역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9.5%의 동의 비율이 **5년 새 15.4%로 올라 무려 6%p나 증가**함. 과거 비도덕적으로 치부되던 '혼외출산'이 점차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범주로 진입하고 있음

- [표 2]에서와 같이, **10대의 경우 9.6%**에서 **20.7%**로, **20대의 경우 8.3%**에서 **23.0%**로, 각각 **2배 이상의 증가** 폭이 확인됨

<표 2>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 비율의 추이 (2015년-2020년)

(단위: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12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2015년	9.4	10.3	8.7	9.6	8.3	13.0	8.7	8.5	9.2	8.8
2020년	15.4	15.7	15.1	20.7	23.0	18.3	14.8	12.5	12.7	7.5

주: 5점 척도에서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며, 2010년에는 비혼 유자녀 항목에 대해 조사되지 않음

자료: 가족실태조사 원자료(2015), 2020 가족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본)(여성가족부, 2021)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양태는 현재의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뚜렷한 격차는 **2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 응답**을 상호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남

- [그림 7]에서 확인되듯, **7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네 가지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비율이 모두 10% 내외**에 그침. 반면, **20대의 동의율은 모두 극적으로 수직 상승**함. 특히, 비혼 독신, 비혼 동거, 혼인 후 무자녀 지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엿보임

[그림 7] 가족 양태에 대한 20대와 70대 이상 간의 가치관 비교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보도자료(2021.5.27.)

<붙임1> 2023년 가족실태조사 내용

ㅇ (조 사 명) 가족실태조사 ※ 제5차 조사 / 3년 주기**(2020년 이후 첫 3년 주기조사)**
ㅇ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ㅇ (조사기간) 2023. 6. 1. ~ 7. 31.
ㅇ (표본규모·조사대상)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ㅇ (조사내용)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 가족돌봄, 가족여가,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1인가구 생활 실태 등

■ 가족 형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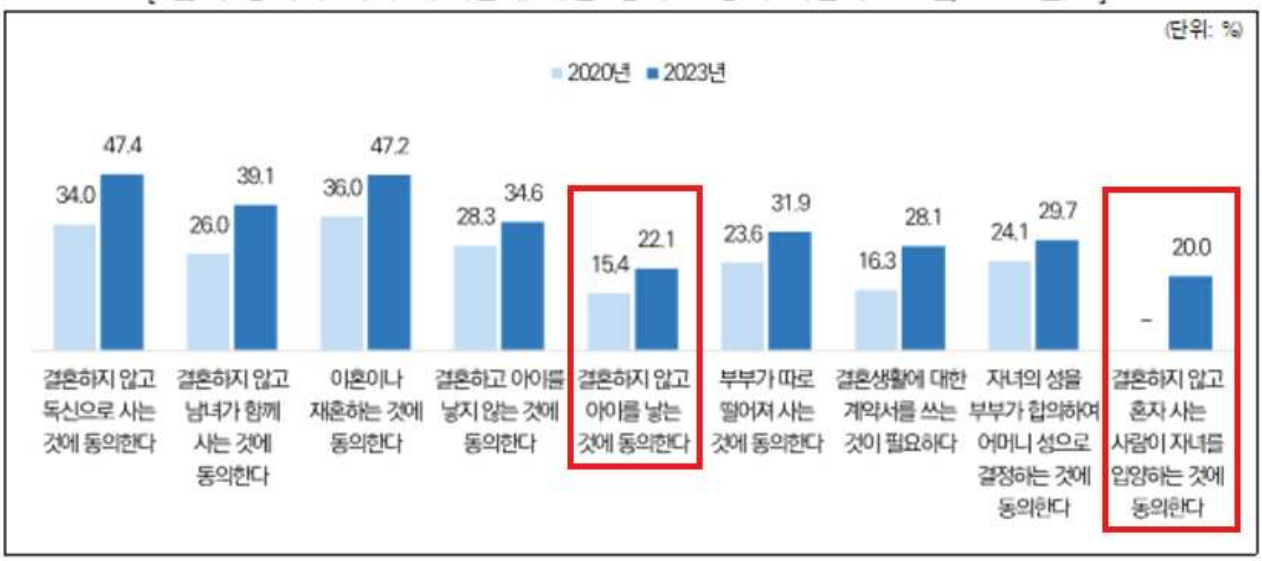
▪ **(비혼동거 사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8.0%), '경제적인 이유'(25.7%),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2.6%) 순임.

▪ **(자녀 계획)** '자녀를 (더)가질 계획'에 대하여 '있다' 8.4%, **'없다' 66.3%**, '생각해본 적 없다' 25.3%, 자녀 계획 '있음' 응답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27.6%)와 30세 미만(15.7%)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47.4%, '이혼(재혼)하는 것' 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34.6%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응답자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의 경우 '20년 34.0%에서 '23년 47.4%로 증가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 (202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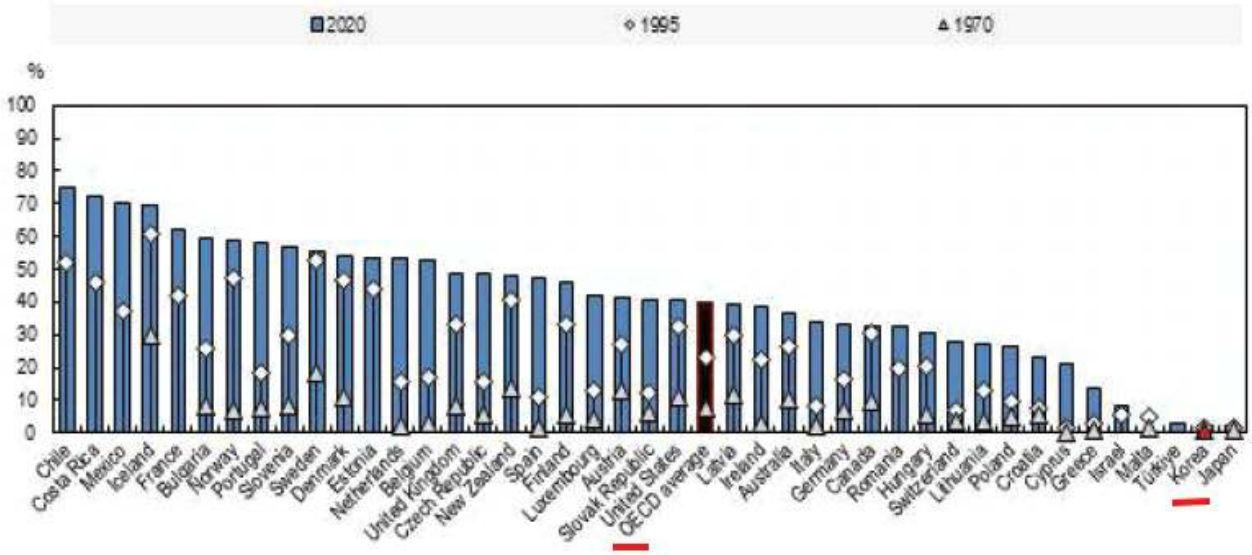


제4절 OECD주요국의 비혼가정 및 혼외출산 증가세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집계된 반면, **한국은 0.92명**을 기록함. OECD 국가들 중 단연 '꼴찌'에 해당함(OECD Family Database 2020.9.)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꼴찌를 면치 못하는 영역이 바로 **'혼외출산 출생아 수'**로, 우리나라는 1995년 단 1.2%였으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2%(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음. **OECD 평균 혼외출생율**이 1970년 7.4%, 1995년 23.9%, **2018년 41.5% 것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

[그림 10] OECD 주요국의 혼외 출생률 (1970년, 1995년, 2020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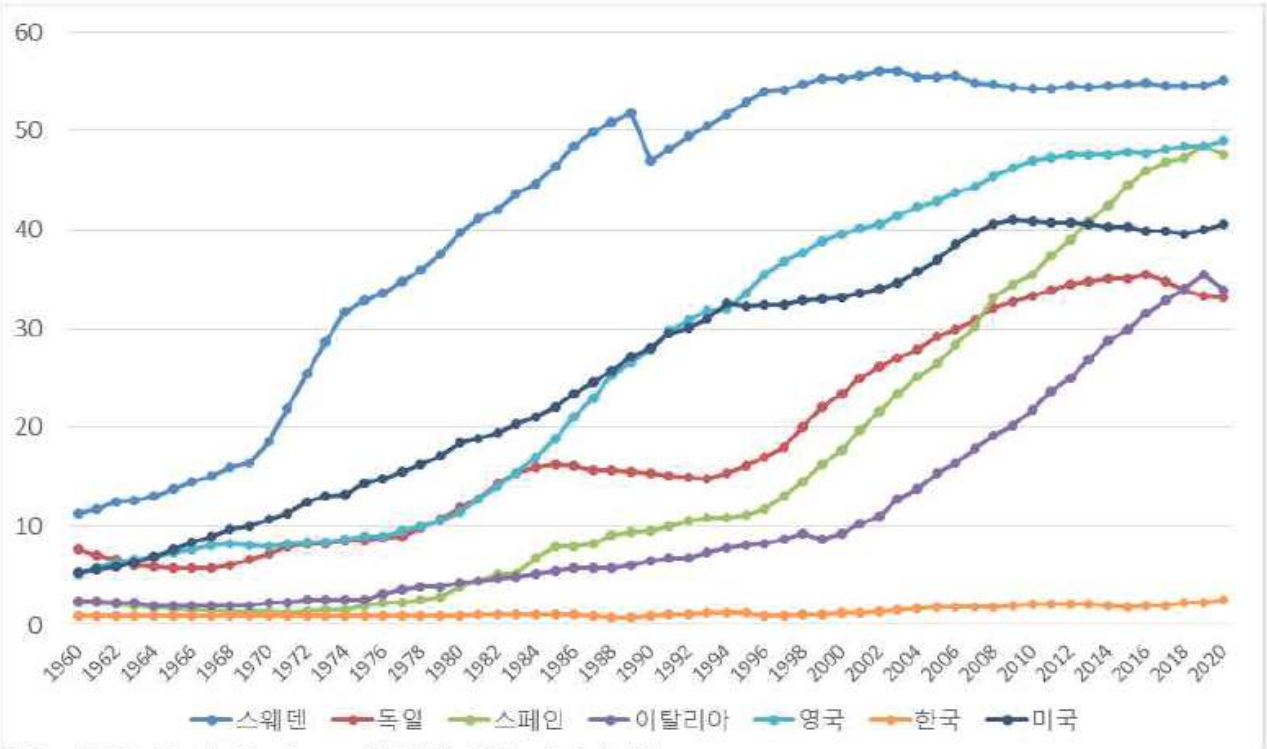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22.9)

○ 합계출산율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OECD국가들이 혼외 출생을 통해 신생아 수의 약 40%를 보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비혼자들을 통한 출생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있음. 단순하게 가정하면,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출생률을 보인다면, 약 1.55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도출**할 수 있음.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일정 부분은 혼외출산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음

○ 서구에서의 혼외 출생이 애초에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아님. [그림11]에 드러난 바와 같이, 반세기 전인 **197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국가 대부분의 혼외출생율은 단 2~8%** 수준에 그쳤음. 이후 꾸준하게 비혼인가가 증가해 옴. 비로소 **80년대를 거치면서 혼외출생율**이 **10%를 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2000년대에 들어서며 혼인과 출산의 디커플링 양상은 유럽과 북미권 전역으로 확산**됨.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혼외출생율 상승이 가장 눈에 띄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혼외출생 비중은 2~3배가량 급증하였음

[그림 11] OECD 주요국의 혼외 출생률 추이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22)의 출산 자료 재가공

○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신생아 출산이 거의 절반이 '혼외출생'인 것을 고려하면, 유럽과 북미권의 국가들은 혼인이 사라진 자리에 동거 형태의 비혼 가정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감. 만혼화와 비혼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혼인가정이 사라지고, 대신 이들의 대부분이 홀로 독신의 삶을 살게 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 크게 대비됨

○ **혼외출산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국가는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이며, 이들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약 1.7명**으로 OECD 내 최상위권이며(2020년 기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약 2.1명)**로, 혼외출산 비중 역시 약 70%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비혼화 및 만혼화가 가속화되었으나, 동거 형태의 유연한 비혼 가정의 확산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특히, 비혼 동거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 부모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은 여전한 과제임. 이러한 문화적 배경하에 우리나라 혼외출생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함

제5절 비혼가정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비자발적 **국내 비혼 인구가 비혼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OECD 주요국과의 결정적 차이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비혼동거 실태조사[5]」 결과에 따르면,

○ 이들은 동거 경험의 긍정적인 면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88.4%)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주로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50.5%) 및 '부정적 시선'(50%)이 주로 제시됨

○ 정부는 **비혼 인구의 증가세에 맞서 이들의 적극적인 가정 구성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고심할

5) 만 19~69세 동거경험이 있는 3,007명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필요가 있음. 기성세대 역시 **'혼인' 아니면 '독신'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비혼자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늘어나는 **비혼 인구를 위한 가족 구성 상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 주어야 함. 비혼 동거가 대안적인 가족 구성의 한 방식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 보호막 아래 놓으면, 종국적으로 출산율 급속한 저하를 막을 수 있음. 특히, 국내 비혼 동거의 혼인의 예비 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❶ OECD 주요국의 비혼가정 등록 제도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비혼 가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에 앞다퉈옴

- 국가마다 운영하는 제도 명칭과 세부적인 지원내역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에 있어 별산제 원칙, 파트너 당사자 외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점, 합의를 통해 자녀의 성씨가 결정**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임

<붙임 2. OECD 주요국의 비혼가정 등록제도> 참고

❷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시 고려사항

- OECD 주요국에서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 특유의 실정에 맞추어 비혼동거 커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정비한 것 같이, 우리나라 역시 **우리 실정에 걸맞은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음

- 서구의 경우 비혼동거는 '동성애커플(혼인불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태동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종교 등 아직 사회적 인식이 안되어 있어, 우선은 **'이성 커플'에 한정한 동거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동거가 혼인의 종류가 아닌 '성적 방종'으로

읽히는 경향이 큼. 젊은 세대와 달리 부모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동거'라는 이름보다 '동반가정 등록제(가칭)'같은 명칭**을 제안해 봄. 동반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안적 가정상으로서의 동거 문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명이라 할 것임

- 앞서「비혼동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동거 가족**의 경우, 다음 세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부분**으로 조사됨
  ① 세금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혜택 부재(62.4%)
  ② 부모 중 1명이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53.1%)
  ③ 주변의 부정적 시선(46.8%)

- 또한, 동거 가정이 자녀를 양육 시 곤란을 겪는 상황으로 **'출생신고 시' 52.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시'가 47.3%**로 나타남. 비혼 동거커플이 당당히 부모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야 함

- **비혼 동거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 결과,
  ① 수술동의서 등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 인정 (65.4%)
  ② 동거관계에서 출생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지위 인정 (61.6%)
  ③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혼인가정과 동등한 혜택부여 (51.9%)
  ④ 사망 혹은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대우 (50.2%)

- 끝으로, '동반 가정'은 법률혼 가정보다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독립된 주체로서의 동거파트너의 지위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온 사회가 다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 **과거의 구태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느 때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지혜와 결단**을 모아갈 때임

<붙임2> OECD 주요국의 비혼가정 등록제도

■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제' :** 1998년 '등록 파트너쉽'(registered partnership)을 도입함으로써 덴마크(세계 최초도입)와 함께 비혼 동거 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가장 앞장선 나라로 평가됨. 등록된 동거 가정에 대해 사회 보장 및 소득세, 이민 규정, 연금 및 상속세 등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프랑스 '시민연대협약(PACS)'** : 국제적으로 가장 알려진 동거법으로, 1999년 민법 내에 신설함으로써 동거의 제도화를 확립함. 동거 관계를 시민간 계약의 성격을 부여, 동거자는 혼인과 달리 각자 재산에 대한 관리 소유 처분권, 공동자산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관리함.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나, 과세의 경우에 공동으로 소득신고 및 공동 납세가 가능함

■ **스웨덴 '삼보(Sambo)'** : 오랜 동거 전통을 지닌 국가로 2003년 동거법(Sambolag)을 제정, 동거 관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동거재산의 정의 및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등을 명확한 법률적 규정을 포함함

■ **영국 '시빌 파트너쉽'** : 2005년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빌파트너십' 제정, 2019년부터 동거 중인 이성커플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실상의 동거법이 설치된 것으로 평가됨. 거주지역 지방정부에 신청함으로써 등록 완료, 반려자 사망시 재산 상속이 가능하며, 유족 연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됨

■ **미국 '가정 파트너쉽'** : 비혼 동거커플에 대한 보호제도를 시행 중으로, 영국처럼 동성 커플에 대한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도입한 것이 시초가 됨. 파트너 등록에 따른 혜택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상호 부양, 생계협조에 대한 의무부과, 병원 및 감옥 등 면회권 제공, 의료보험 가입 등 차별 없이 제공함

■ **호주 '사실상 공동체 관계'** : 1975년 개정된 연방가족법에 '사실상 공동체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성간 동거관계 법적 보호장치를 일찍이 마련함. 혼인하지 않은 성실한 가정생활을 해온 이성커플, 2년 이상 지속된 동거 기간을 기본 요건으로 함. 이성가족을 먼저, 2008년에는 동성도 포함하였으며, 업무재해에 따른 보상, 관계해소 시 재산분할, 파트너 유고 시 상속 등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 등

□ 검토의견

○ 최근 유명연예인의 비혼 등 혼인외 출산 및 가정이 화두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2023년 비혼 출산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사회조사」에서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경상북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정부에 '동반 가정 등록제' 등 다양한 방식의 가구 인정 등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힘[6)]

○ **기존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결혼한 부부(일부 사실혼 포함)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정책 수요를 '혼인관계'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 경제력 있는 비혼 여성의 단독 임신과 출산은 자기 기획력이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장려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임[7)]

○ **전북자치도**는 최근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발표한 바 있음[붙임 3]. 다만, 출생·양육 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 정책들의 연장선으로, **주로 혼인 관계에 근거한 양육 지원 및 공공영역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보임.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혼외 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제안하는 등 협력 강화가 필요

---

6) 경북도,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한다 (국민일보 2024.12.02.)

7)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09.)

<붙임3>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24.11.18.발표)

■ 주요 추진과제

청년은 희망피움, 아이는 함께키움, 전북은 행복이음

추진 방향	취업·결혼은 가볍게 일자리·주거안정 등 경제적 부담완화	출생은 건강하게 임신·출산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양육은 행복하게 육아시간 보장, 긴급돌봄 및 통합 돌봄 인프라 강화
핵심 추진 과제	부담완화 1_집 · 전북형 "반할" 주택 500호 건립 ·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사각지대해소 1_소상공인 · 소상공인 임신출산 금융지원 · 전북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행복양육 1_부모 안심·응원 · 아빠 육아 응원 · 가사육아일 전북형 쉼표 · SOS 돌봄체계 구축 · 전북형 무상보육
	부담완화 2_취업 · 다자녀가구 채용기회 확대 · 전북형 청년 친화기업 육성 · 전북청년 함성 패키지 확대	사각지대해소 2_의료취약지 · 산후건강 인프라 구축 · 산후 회복 비용 지원 · 임산부 응급의료 강화	행복양육 2_아이행복·안전 · 아이맞춤 놀이 지원 · 전북형 늘봄학교 · 아픈아이 신속대응
	부담완화 3_결혼비용 · 전북청년 웨딩 피로영(0) 패키지 시범사업 · 전북청년 달달이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	사각지대해소 3_난임 ·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소득연령무관) · 한방 난임부부 지원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행복양육 3_YES 키즈 · 2자녀 이상, 다(多) 드림(dream) · 도청으로 소풍오는날 확대운영

가족 친화 문화 확산	"공공부문이 앞장 서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게"	
	보육특별휴가 및 다자녀 +α	배우자 동행휴가 (난임치료, 임신검진)	손자녀 돌봄시간 (1일 2시간, 12개월)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출퇴근 자유롭게 (초등부모 1시간 자율)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전북형 일육아동행 (주4일 출근제 등)			전북형 워라밸 기업만들기 (컨설팅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센티브 확대

참고 2024년 사회조사 결과(요약) (통계청 '24.11.12.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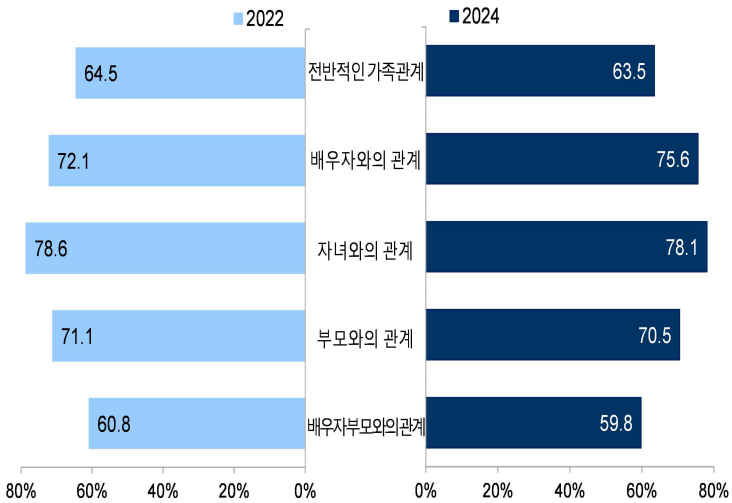
Ⅰ 가족분야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3.5%로 2년 전보다 1.0%p 감소함
◇ 10명 중 7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지원(33.4%) 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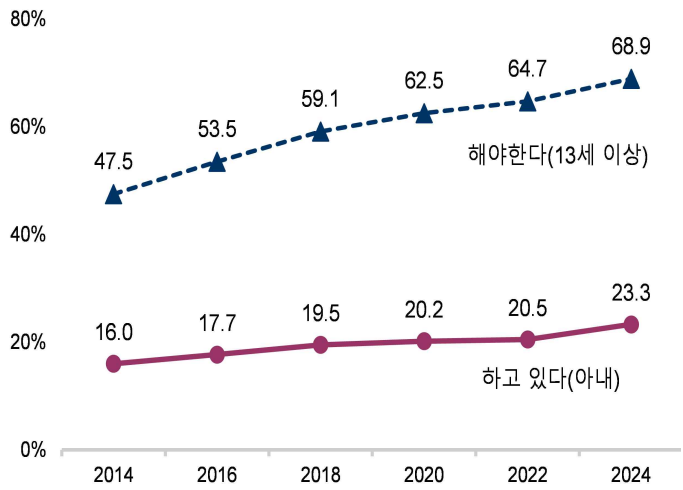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3.5%로 2년 전보다 1.0%p 감소함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9%로 2년 전보다 4.2%p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은 23.3%임

< 가족 관계 만족도 >



< 가사 분담 '공평하게' 비중 >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함

* 결혼 「해야한다」 (%): ('14) 56.8 → ('16) 51.8 → ('18) 48.1 → ('20) 51.2 → ('22) 50.0 → ('24) 52.5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크고, 다음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임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했으며, '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함

* ('14) 46.6% → ('16) 48.0% → ('18) 56.4% → ('20) 59.7% → ('22) 65.2% → ('24) 67.4%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4) 22.5% → ('16) 24.2% → ('18) 30.3% → ('20) 30.7% → ('22) 34.7% → ('24) 37.2%

○ 한 가정에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66.9%)**, 1명(19.2%) 순이며, 평균 1.89명임

○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일자리 지원(20.8%) 순임

2024년 사회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 기준시점 및 기간

○ (기준시점) 매년 5월 15일이 포함된 주 수요일('24. 5. 15. 0시 기준)

○ (조사기간) '24. 5. 15 ~ 5. 30.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표본 규모

○ (목표) 1,548개 조사구 18,576 가구 내 35,777명

○ (응답) 1,548개 조사구 18,449 가구 내 35,304명

□ 조사항목

○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

- (짝수 해)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 (홀수 해)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함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함

* 결혼 「해야 한다」(%) : ('14) 56.8 →('16) 51.8 →('18) 48.1 →('20) 51.2 →('22) 50.0 →('24) 52.5

○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은데, 특히 미혼 남녀의 경우 견해 차이가 15.6%p로 더 크게 벌어짐

< 결혼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해야 한다[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2)]	잘 모르겠다
2022년	100.0	50.0	43.2	3.6	3.2
2024년	**100.0**	**52.5**	**41.5**	**3.3**	**2.7**
남자	100.0	58.3	36.0	2.5	3.1
여자	100.0	46.8	46.8	4.1	2.3
미혼남자	100.0	41.6	47.8	4.0	6.6
미혼여자	100.0	26.0	61.9	7.0	5.0
13~19세	100.0	33.7	54.5	4.2	7.6
20~29세	100.0	39.7	50.4	4.8	5.0
30~39세	100.0	43.9	48.4	4.5	3.2
40~49세	100.0	43.3	50.6	4.0	2.0
50~59세	100.0	52.3	42.8	3.3	1.6
60세 이상	100.0	72.3	24.9	1.4	1.4

주: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크고,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임

○ 미혼남녀 모두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미혼남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미혼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순임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단위: %)

	계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 되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 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1)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 되어서	기타
2022년	100.0	28.7	12.8	14.6	13.6	7.7	12.2	8.5	0.6	1.1	0.2
2024년	**100.0**	**31.3**	**15.4**	**12.9**	**11.3**	**9.1**	**8.2**	**7.8**	**2.8**	**1.0**	**0.3**
남자	100.0	34.9	14.5	14.4	10.1	7.3	7.9	6.9	2.9	0.7	0.4
여자	100.0	27.7	16.2	11.4	12.5	10.8	8.4	8.7	2.7	1.3	0.3
미혼남자	100.0	38.0	11.0	12.4	11.4	6.1	8.8	7.8	3.4	0.5	0.5
미혼여자	100.0	25.0	14.4	8.1	19.1	10.8	8.9	10.1	1.8	1.2	0.7

주: 1) 2024년부터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로 변경

2.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이혼 및 재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견해가 가장 높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재혼에는 긍정적임

□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비중은 20.5%로 계속 증가 추세임

*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 ('14) 12.0 → ('16) 14.0 → ('18) 16.7 → ('20) 16.8 → ('22) 18.7 → ('24) 20.5

□ **재혼을 해도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중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3%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함

* 해야 한다(%) : ('14) 16.5 → ('16) 14.2 → ('18) 12.4 → ('20) 8.4 → ('22) 8.1 → ('24) 8.3

□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중이 7.1%p, 재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4.5%p 높음

<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이혼				재혼			
		해서는 안 된다[1]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해야 한다[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3]	잘 모르겠다
2022년	100.0	27.1	49.2	18.7	5.0	8.1	67.5	14.9	9.6
2024년	**100.0**	**26.6**	**48.2**	**20.5**	**4.6**	**8.3**	**67.0**	**16.1**	**8.6**
남자	100.0	30.2	46.7	17.9	5.2	10.6	67.6	12.6	9.2
여자	100.0	23.1	49.7	23.1	4.1	6.1	66.4	19.5	7.9
미혼	100.0	13.6	51.5	26.9	8.0	5.3	72.7	8.8	13.2
배우자 있음	100.0	32.4	48.3	16.2	3.0	9.4	66.0	18.4	6.2
사별	100.0	48.8	32.2	14.6	4.5	12.0	50.8	28.7	8.6
이혼	100.0	13.5	47.6	36.5	2.4	9.6	65.1	17.7	7.6
13~19세	100.0	15.1	51.9	21.8	11.3	3.7	67.8	9.6	18.9
20~29세	100.0	13.1	53.0	27.5	6.4	5.0	74.5	8.6	11.8
30~39세	100.0	18.2	53.8	23.3	4.7	5.5	76.5	9.9	8.1
40~49세	100.0	20.2	55.5	21.3	3.1	6.3	73.4	14.0	6.3
50~59세	100.0	23.5	52.4	20.5	3.6	8.5	67.0	17.9	6.5
60세 이상	100.0	45.3	35.7	15.3	3.8	13.3	55.1	24.0	7.6

주: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3.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했으며, '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4) 46.6% → ('16) 48.0% → ('18) 56.4% → ('20) 59.7% → ('22) 65.2% → ('24) 67.4%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4) 22.5% → ('16) 24.2% → ('18) 30.3% → ('20) 30.7% → ('22) 34.7% → ('24) 37.2%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p 증가했으며, 그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8.7%p 더 높음

□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1%로 2년 전보다 0.5%p 증가함

□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1.1%로 2년 전보다 2.3%p 감소, 그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6.1%p 더 높음

<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동의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반대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2022년	100.0	65.2	18.0	47.2	34.8	22.2	12.6
	2024년	**100.0**	**67.4**	**19.5**	**48.0**	**32.6**	**21.6**	**11.0**
	남자	100.0	69.7	20.3	49.4	30.3	20.2	10.1
	여자	100.0	65.2	18.6	46.5	34.8	22.9	11.9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22년	100.0	34.7	8.3	26.4	65.3	36.2	29.2
	2024년	**100.0**	**37.2**	**9.2**	**28.0**	**62.8**	**35.7**	**27.1**
	남자	100.0	39.1	9.6	29.5	60.9	35.4	25.5
	여자	100.0	35.3	8.8	26.5	64.7	36.0	28.7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2022년	100.0	65.3	21.6	43.8	34.7	23.9	10.8
	2024년	**100.0**	**68.4**	**23.4**	**44.9**	**31.6**	**22.7**	**9.0**
	남자	100.0	72.8	24.9	47.9	27.2	20.8	6.5
	여자	100.0	64.1	22.0	42.1	35.9	24.5	11.4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2022년	100.0	75.6	24.9	50.7	24.4	17.5	6.9
	2024년	**100.0**	**76.1**	**25.5**	**50.6**	**23.9**	**17.2**	**6.8**
	남자	100.0	77.6	25.1	52.5	22.4	16.4	6.0
	여자	100.0	74.6	25.9	48.7	25.4	17.9	7.5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2022년	100.0	43.4	9.0	34.4	56.6	41.7	14.9
	2024년	**100.0**	**41.1**	**8.4**	**32.7**	**58.9**	**43.2**	**15.7**
	남자	100.0	44.2	8.8	35.3	55.8	42.7	13.1
	여자	100.0	38.1	8.0	30.1	61.9	43.6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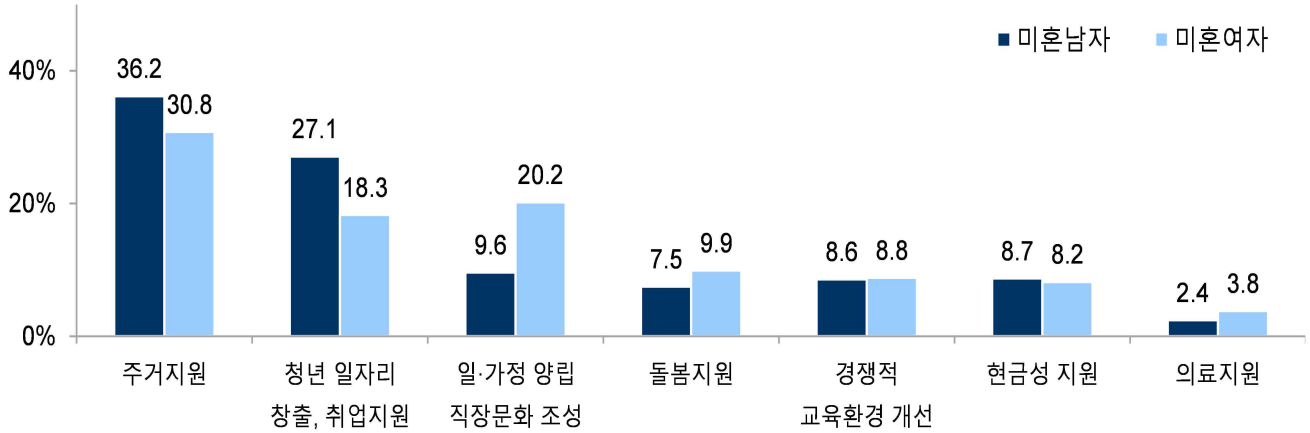
4. 저출생 대책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 일자리 지원(20.8%) 순임

□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거지원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취업 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순임

○ 미혼남녀 모두 주거지원이 가장 높고, 미혼 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여자는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으로 나타남

< 미혼남녀의 저출생 대책(주된 응답) >



< 저출생 대책(주된 응답)[1] >

(단위: %)

	계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창출,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돌봄 지원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현금성 지원	의료 지원
2024년	**100.0**	**33.4**	**20.8**	**14.0**	**11.5**	**9.1**	**8.0**	**3.1**
남자	100.0	35.6	23.1	11.3	10.0	9.2	8.3	2.6
여자	100.0	31.3	18.6	16.5	13.1	9.0	7.8	3.6
미혼남자	100.0	36.2	27.1	9.6	7.5	8.6	8.7	2.4
미혼여자	100.0	30.8	18.3	20.2	9.9	8.8	8.2	3.8
13 ~ 19세	100.0	25.9	25.7	10.0	7.9	14.6	11.8	4.1
20 ~ 29세	100.0	34.4	24.1	17.0	7.1	6.7	8.3	2.5
30 ~ 39세	100.0	35.4	14.8	18.6	12.0	6.8	9.2	3.3
40 ~ 49세	100.0	31.9	14.5	17.1	12.9	13.0	7.6	3.0
50 ~ 59세	100.0	33.0	20.9	13.5	12.5	11.0	6.4	2.8
60세 이상	100.0	34.9	24.9	9.7	12.8	6.7	7.7	3.3

주: 1) 2024년 신규 문항

5. 입양에 대한 견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자녀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중이 **40.3%**로 2년 전보다 2.4%p 증가함

○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입양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 비중은 21.7%로 2년 전보다 2.3%p 증가함,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은 9.0%로 2년 전보다 0.5%p감소

< 입양에 대한 견해[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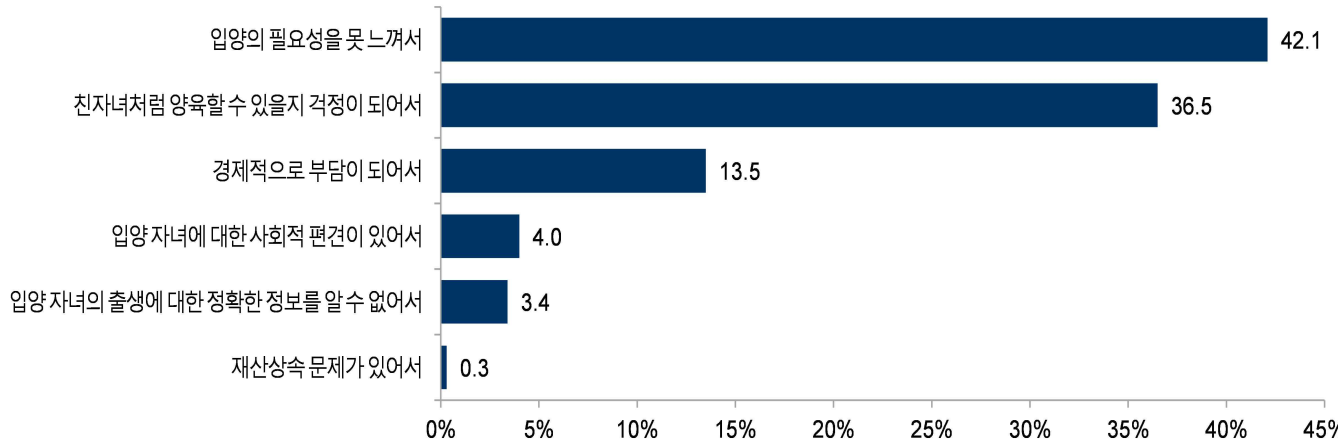
(단위: %)

	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22년	100.0	19.4	9.5	37.9	33.1
2024년	**100.0**	**21.7**	**9.0**	**40.3**	**29.1**

주:1) 19세 이상 응답자

□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42.1%),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36.5%),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13.5%) 순임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3. 건설공사비 급등 대응 동향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요약 ≫

◇ 건설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 동향

□ 검토 배경

○ 건설공사비 상승은 주택공급 절벽과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

○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중동지역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공사비지수는 '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3년간 약 30% 급등

- '00년~'20년 건설공사비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4% 내외임을 감안하면, 7~8년에 걸쳐 오를 공사비가 단 3년만에 상승
- 특히, 공사비 구성비중이 큰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기계 임대료와 운용 인력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는 건설기계 임대료도 동 기간 빠르게 상승

○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 6~7월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주요 자재비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여전히 장기추세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또한, 자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멘트(전체 공사비의 10% 가량을 차지)의 경우 원료 가격이 하락, 오히려 공급가격이 상승,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간 갈등 요인

○ 건축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착공 물량이 줄고 공사 지연이 빈발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감소, 가격상승 등 주거 불안을 초래하게 되며, 건설 현장에서도 사업성 악화, 신규 착공 및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의 회복에도 제약

□ 정부 대책 : 공사비 안정을 통해 건설시장 활력 제고 추진

○ 정부(기재부·국토부)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할 계획

○ 우선,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적정 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 수요·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

- 또한,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최근 4년간 24.5% 상승한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바다·산림 골재 채취를 확대

○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그간 금지했던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한해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

- 아울러, 건설업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가동, 불법·불공정행위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

□ 자치단체 :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중재 역할 수행

○ 서울시, 공사비 인상 관련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도시 정비·법률·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양측 입장 청취 후 조정안 제시 등 갈등 중재 역할을 수행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부산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공사비 검증과 자문 역할을 제공, 공사비 인상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 대전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물가변동(Escalation) 반영을 검토

- 사전컨설팅감사로 타당성 확보 후, 지난 4월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을 시공한 업체에 물가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

○ 경기 광주시 소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가 아파트 정문을 봉쇄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으나, 市의 중재하에 6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갈등을 봉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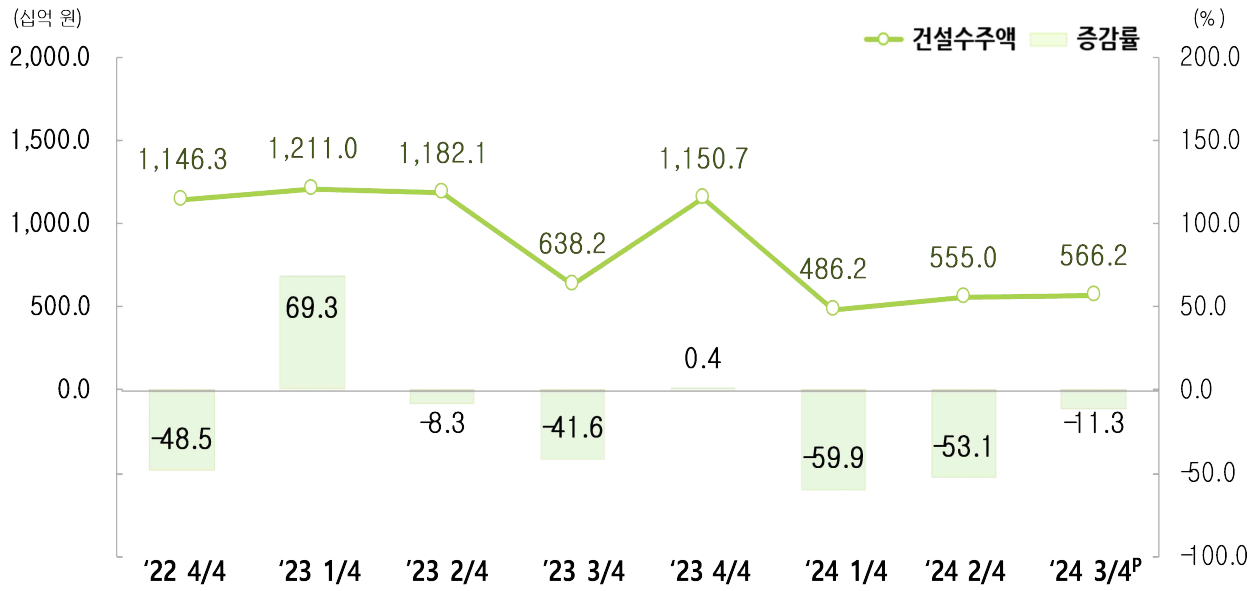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주택건축과]

○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5,662억 원으로 건축공사 수주는 늘었으나 토목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1.3%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건설수주 주요 증감내역(공종별·발주자별) 】

공종별	**(증가)** 건축(22.8%)	**(감소)** 토목(-56.7%)
발주자별	**(증가)** 공공(39.3%) 등	**(감소)** 민간(-33.0%)

【 건설수주액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 증감률(경상)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2024 3/4P**	기여도
건설수주액		**-48.5**	**69.3**	**-8.3**	**-41.6**	**0.4**	**-59.9**	**-53.1**	**-11.3**	-
공종별	건축	-47.6	67.9	-38.5	-43.6	0.2	-72.9	-19.1	**22.8**	13.0
	토목	-49.7	76.4	69.0	-38.7	0.6	2.4	-84.8	**-56.7**	-24.3
발주자별	공공	-50.4	133.0	44.9	-55.3	-27.6	-42.4	-56.7	**39.3**	11.66
	민간	-45.6	54.0	-33.0	-32.1	29.6	-65.2	-48.8	**-33.0**	-23.18
	국내외국기관	-94.7	194.7	-15.6	-94.3	-100.0	-100.0	24.5	**432.1**	0.24
	민자	-100.0	-100.0	-100.0	-100.0	-	-	-	**-**	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2024년 3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5,662억 원으로 '24년 2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전북자치도에서 도산위기에 내몰린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분의 공사 수주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분의 건설 수주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공사비 관련 분쟁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는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토교통부의 분쟁지역 지정에 대한 우려로 현황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정비사업구역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전북자치도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갈등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연구요약 》

◇ **저출생 및 인구 유출·이동에 따른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요구, 교육과 연계한 지역인재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1. 연구의 필요성

□ 지역인재정책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인구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의 가속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 지역발전 전략 및 국가 단위 저출생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

○ 저출생이 지역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오는 불가항력적인 지역소멸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인구 유출 및 이동에 따른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임

○ 지역의 산업구조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과도 연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기반이 마련

2. 지역소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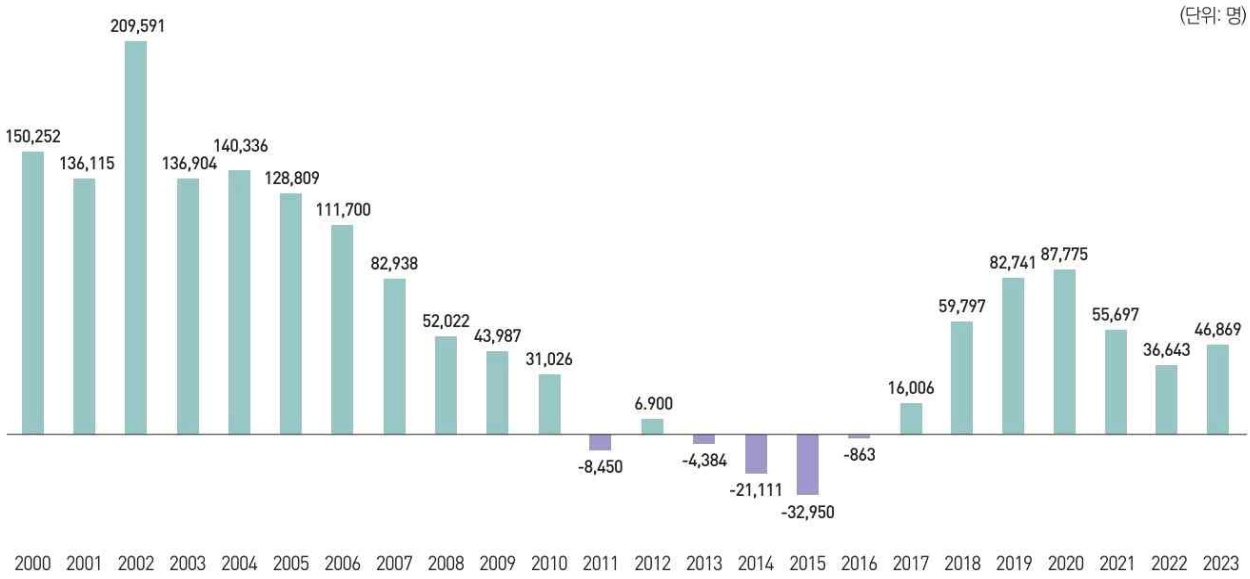
□ **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지역 인구**가 해당 지역이 속한 권역의 거점도시로 이동하기보다는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한 방향의 흐름이 지속**

- 수도권 인구집중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큰 영향을 미침
- 2004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2017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규모가 점차 증가**함

- 2000년에는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약 46.3%였지만, 2020년 이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함



| 그림 1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순이동 변화(2000~2023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0~2023년.

○ 청년층의 이동 지역을 세분화하면,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과 강원지역에는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 **호남·제주권에서는 60% 이상**, 동남·대경권에서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

| 표 1 | 권역 간 청년층 이동 양상(2013~2023년)

(단위: %)

전출지 \ 전입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	제주
수도권	-	18.4	34.4	17.5	13.3	12.3	4.0
동남권	56.6	-	10.9	6.8	20.9	2.7	2.1
충청권	71.1	7.3	-	9.2	7.1	4.2	1.0
호남권	65.3	9.2	17.5	-	4.0	2.4	1.5
대경권	52.4	25.8	13.6	3.7	-	3.2	1.3
강원	70.7	6.1	12.6	4.0	5.9	-	0.8
제주	61.2	13.9	8.3	8.0	6.5	2.1	-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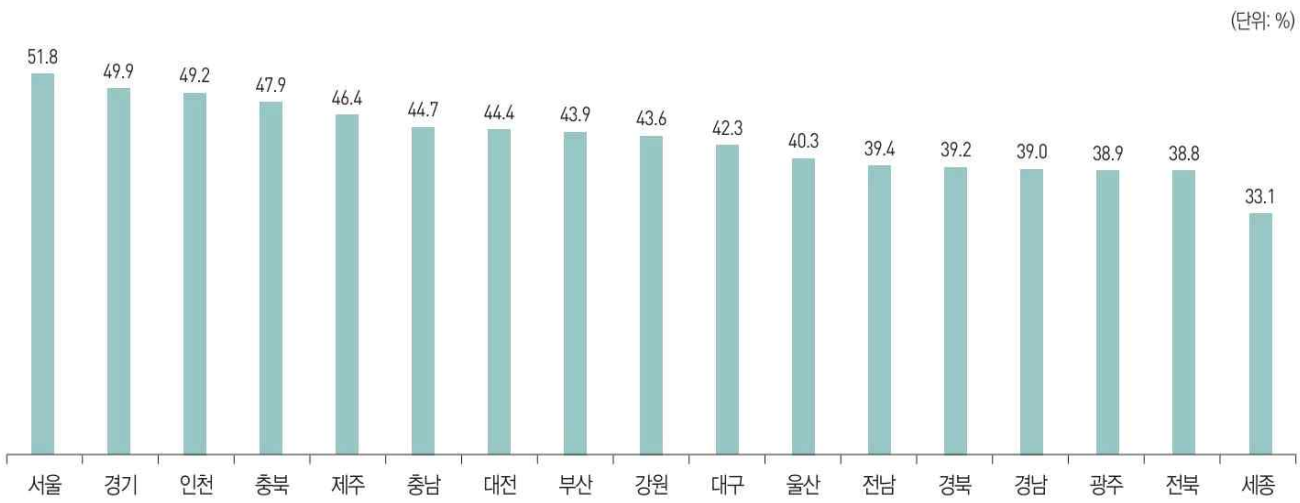
□ 지역소멸 또는 지역 인구감소는 곧 지역경제의 축소를 의미

○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00년 48.0%에서 2015년 이후 50%를 상회하여, 2022년 53.3%로 나타남

- 이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시점인 2020년보다도 앞서는 시기로, **전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물적자원의 생산 기반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태에 이르렀음

○ 지역 경제의 쇠퇴는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침

- 수도권(서울 51.8%, 경기 49.9%, 인천 49.2%)의 청년 고용률은 약 50%로 전국 평균인 43.4%보다 높으나, 비수도권(전남,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세종)의 청년 고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그림 2 | 시도별 청년(15~29세) 고용률(2023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 지역 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2023년 기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포함한 **전국 323개 대학교 중 약 35%에 해당하는 113개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

표 2 | 시도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수(2023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문대학	9	8	7	3	6	4	2	1	30	8	5	6	8	9	15	10	2	133
대학	38	12	3	3	10	11	2	2	30	8	11	13	8	10	18	9	2	190
계	47	20	10	6	16	15	4	3	60	16	16	19	16	19	33	19	4	32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3년.

○ 2000~2023년 입학정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일반대학 입학정원의 연평균 감소율은 전북(-1.9%), 전남(-1.2%), 제주(-0.8%), 경북 및 대구(-0.6%)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인천 및 경기(1.00%), 대전(0.68%) 등 대도시 중심 지역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연평균 감소율은 강원(-5.4%), 경북(-5.2%), 부산(-4.9%), 광주(-4.5%), 경남(-4.4%), 충남(-4.2%) 순으로 크게 나타남

3. 미래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 일터에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생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역소멸은 표면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에 따른 것이지만,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사회 활동의 유인 체계 부족**에도 **원인**이 있음

-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생산성 고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획일적 자격과 숙련을 기르는 양적 인재 양성 및 활용 방식에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통섭형 인재를 기르고 활용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요구**

- 지역 단위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서 지식 전달 중심의 획일적 접근보다 **개별화 학습과 같은 다원적 접근**을 고려

□ 영유아 → 학생 → 청년 → 성인 → 노인에 이르는 **인적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계획이 요구**됨

○ 지역인재정책은 지역 및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및 정치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역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습, 고용, 복지, 문화 등을 연계·지원하여 **양질의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지역사회의 문화는 인재 양성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의 기업 유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은 지역인재의 학습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지역 내 공공 및 사립 교육기관, 교사 등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는 지역인재의 양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환경도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 정주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정책 이외에 지역에서 경제, 복지, 문화 등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

○ 사람들은 일시적 거주, 여행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위해 지역을 넘나들며, 지역의 생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 교육과 직업을 찾아가는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활동공간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일을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등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입을 촉진**

4. 시사점

○ 인구감소와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은 **지역산업의 쇠퇴, 교육여건의 악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

○ **지역소멸 대응의 관점**을 양적 투입인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질적 투입인 고숙련 인재의 양성과 활용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지역인재정책으로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일과 삶의 조화**를 함께 고려

- 특히 지역인재의 교육에 있어 학령기 학생의 개별화 학습 이외에도 재직자, 노인, 외국인 등의 숙련향상(upskilling)과 숙련갱신(re-skilling) 또한 중요한 영역임

○ **지역인재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함

-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기획하며,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원화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필요

Ⅳ.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재직 유도정책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직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공제 사업으로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일반공제, 2014년~현재 운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18~2022년 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023년 가입) 등 3개의 내내역 공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2,078억 9,900만원 중 98.4%인 2,04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3회계연도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불용]	예산액
인력유입인프라조성	211,174	211,174	207,823	0	3,351	123,339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07,899	207,899	204,548	0	3,351	121,685
내일채움공제	1,533	1,533	1,533 [1,429]	0	0 [104]	1,53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6,575	186,575	186,575 [160,021]	0	0 [26,554]	106,19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9,791	19,791	16,440 [6,099]	0	3,351[1] [10,341]	13,958

주: 1)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불용액까지 포함할 경우 136억 9,200만원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소관 3개 공제사업은 기본적으로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수행 방식에서도 재직근로자와 중소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납입· 출연하여 적립하고, 만기시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목돈을 지급한다는 기본 방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 다만, 세부적으로는 가입대상과 정부지원 여부, 납입액 등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① 내일채움공제(일반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기업 대표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로서 연령제한 없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별도의 정부 직접지원 없이 재직근로자와 기업이 1대 2의 비율로 납입금을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있으며, 재직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각각 총 720만원(24%), 1,200만원(40%), 1,080만원(36%) 씩을 적립한다.

○ ③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2022년 일몰 이후 신설된 후속 공제사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비슷한 사업구도를 가지나 가입기간과 기업·정부 납입액이 일부 다른 것이 특징이다.

○ 그 밖에 유사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부담금이 있지만 이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여 실제 기업 부담은 없는 것이 특징인 사업이다(2023년을 끝으로 신규가입 중단).

[주요 내일채움공제 비교]

구분	내일채움공제 (일반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형)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가입기간	5년	5년	3년	2년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대상인력	지정 핵심인력	재직 6개월 이상 청년	재직 6개월 이상 청년	청년
납입비율	근로자:기업=1:2 (월 최소 34만원)	청년:기업:정부 =720:1,200:1,080만원	청년:기업:정부 =600:600:600만원	청년:기업:정부 =400:400:400만원 (기업분 기금보전)
만기적립액 (이자 별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800만원	1,200만원
가입 가능여부	가능(운영 중)	신규가입 중단 (~22년 종료)	신규가입 중단 (23년 종료)	신규가입 중단 (~23년 종료)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첫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중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을 받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가입수요 과다 예측 등으로 인해 가입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여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된 문제가 있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하 "플러스 사업")은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15,000명 가입을 목표로 하여 해당 1년치 적립금 200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197억 9,100만원의 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집행 결과 가입자 수는 목표 대비 36.4%인 5,465명(그 중 219명 중도 해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플러스 사업의 적립금 집행액은 60억 9,900만원으로 30.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실집행 단계의 불용액을 합하면 136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2023년 주요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단위: 명, 개사, %)

구 분	신규 가입				누적 가입	
	목표(A)	실 적		달성률 (B/A)	누적 가입인원	누적 업체 수
		가입자(B)	기업			
내일채움공제 (일반공제)	10,000	12,422	3,336	124.2	94,611	34,79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	-	156,869	52,9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5,000**	**5,465**	**3,773**	**36.4**	5,465	3,773
합 계	25,000	17,887	7,109	-	256,945	91,4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주요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배정예산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내일채움공제 (일반공제)	1,533	1,429	93.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6,575	160,021	85.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9,791**	**6,099**	**30.8**
합 계	207,899	167,549	80.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플러스 사업의 가입률과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로는 해당 예산의 미집행 불용에는 당초 가입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플러스 사업은 당초 가입목표를 15,000명으로 설정하면서도 업종을 제조·건설업으로 한정하였다. 플러스 사업보다 혜택이 높고, 가입범위도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허용했던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가입목표가 20,000명임을 감안하면 해당 목표는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과거 사업평가 과정에서 신규 가입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2022년), 중도해지율이 높은 문제(2021~2023년)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플러스 사업의 차이점]

구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023)
대상범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자	중소·중견기업 중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자
가입목표	20,000명	15,000명
실제가입 (달성률)	20,971명 (104.9%)	5,465명 (3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집행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러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공제사업 시작(3월) 전 2월 한 달 동안 사전 접수를 받고, 사업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전 또는 사업 중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접수 이후 또는 사업기간 중 면밀한 가입률 추이 분석을 통해, 제조 ·건설업 외 타 업종으로의 가입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가용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했어야 했다.

○ 청년재직자들이 특정 직장에 장기 재직하는 것은 청년재직자 스스로에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속 중소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도 소속 청년재직자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본 사업은 제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변하고 있어 가입자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운영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향후 관련 제도 도입 시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은 공제 제도의 종류와 가입범위, 혜택 등이 해마다 큰 폭으로 변하고 있으며 방향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의 비일관성은 가입자 간에도 가입연도에 따라 혜택이 다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운영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까지 운영되었던 기존 사업에 비해 2023년에 운영된 플러스 사업은 가입혜택이나 가입범위가 줄어들었다. 2022년 기존 사업은 모든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플러스 사업은 50인 미만 규모의 제조 ·건설업종의 기업으로 가입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근로자 본인부담률이 기존 24%에서 33%로 늘어났으며, 반면 정부 지원금은 총1,0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가입기간의 차이를 감안해도 청년재직자가 만기 시 받게 되는 적립금의 크기가 크게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플러스 사업의 차이점]

구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기간		5년	3년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납입액	청년 재직자	720만원 (24%)	600만원 (33%)
	기업	1,200만원 (40%)	600만원 (33%)
	정부	1,080만원 (36%)	600만원 (33%)
만기지급액		3,000만원 + 이자	1,800만원 + 이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뿐만 아니라 본 제도는 신규 가입이 종료되면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공제 가입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사업이 종료된다. 따라서 2022년 기존 사업의 경우 마지막 가입자의 가입기간(5년)이 끝나는 2026년까지, 2023년 플러스 사업의 경우 마지막 가입자의 가입기간(3년)이 끝나는 2025년까지 각각의 사업이 분절되어 각각 유지된다. 이는 사업 관리 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특히 플러스 사업은 2023년 도입되어 한 해 동안만 유지되고 폐지되었는 바, 향후 2024년 이후 유사 공제사업이 도입될 경우 사업의 비일관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 장기재직 유도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플러스 사업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 설계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중소기업도약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역시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기존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직자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② 청년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청년 전용 저축통장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우대저축(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었다. 그 밖에도 ③ 개별 부처별로 추진 중이었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운영함으로써 선정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2024년 4월 발표 중소기업 재직 유인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

❶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강화
* 가입목표(만명) : ('23) 1.2(실적) → ('24) 1.4 → ('25) 2.0 → ('26) 2.5
** 현행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및 혜택
: (기간) 최소 5년 이상 ※ 中企 평균 근속연수 3.9년(통계청) 고려 검토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연계(7년) 시 격려금 400만원

❷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신설 검토
* 매월 일정금액 불입(청년 근로자) + 가산금리 우대(은행+中企)

❸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운영하여 우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공동 발굴·확대*강화
* (例) 「(중기부)참 괜찮은 중소기업」 + 「(고용부)강소기업」 = 「가칭참 괜찮은 강소기업」으로 통합
** (안) 부처별 각각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통합 제공하고, R&D·수출 등 가점 추가발굴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합니다" - 중소기업 도약 전략」, 2024.4.29.

○ 그 동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플러스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재직자들이 장기 재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을 합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 운영기간 동안 총 16만 2,334명이 공제에 가입하였으며, 1만 5,857명이 가입기간을 완료하여 만기 적립금 혜택을 받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된 2023년도 역시 전년도(2022년) 말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있었던 9만 7,448명 중 13.7%인 1만 3,322명이 가입기간을 완료하여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였다.

[주요 내일채움공제 누적 성과(사업기간 전체)]

(단위: 명)

구 분	2023				누적			
	신규가입	중도해지	만기수령	가입유지(연말)	신규가입	중도해지	만기수령	가입 중
내일채움공제(일반공제)	12,422	5,373	5,652	36,579	94,611	35,218	16,532	36,57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	14,620	13,322	69,083	156,869	66,796	15,857	69,08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219	0	5,246	5,465	219	0	5,246
합 계	17,887	20,212	18,974	110,908	256,945	102,233	32,389	110,9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는 여타 정책 목적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시사점을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청년재직자는 다른 연령대 재직자에 비해 보유 자산의 크기, 장기근속에 필요한 숙련도 보유정도 등이 작아 5년 이상의 장기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에 진행된 적정 공제 가입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근로자들은 3년의 단기 가입기간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5년 이상의 장기 근속이 적립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적립금 수급이 개시되기까지 지불해야 하는 근로자적립금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현재 청년층 외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특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가입기간, 가입규모에 있어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 관련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청년재직자 관련 제도 가입 시 해당 소속기업의 반대 의사가 주요한 가입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제 등 제도가입 의사는 주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 의해 결정(58.6%)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해당 기업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비숙련 청년재직자의 경우는 가입 시 기업 대표자를 설득하는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가 먼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기업 측에 가입을 먼저 제안해야 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전체 응답자의 34.6%가 기업 부담분의 존재로 인해 가입을 제안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현행 내일채움공제 역시 기업이 67%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부담금의 존재가 청년재직자의 공제 가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 방식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 ③ 끝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의 경우, 불입액이 재직자 자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월급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여력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근로자나,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기초연금 재정자주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현액 18조 5,206억 4,600만원 중 18조 1,90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3,305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3회계연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기초연금 지급	1853062	1853062	-	△9,786	1852066	1819029	35	330582	2201456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 665만 명 대상으로 기초연금 월 321,950원(실제 323,180원)를 지급하기 위해 18조 5,077억 8,700만원, 제도운영비로 2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 편성내역]

구분	산출내역
기초연금 급여	○기초연금지급 : 18,530,432백만원 - 기초연금 급여 : 18,507,787백만원 * 수급대상자 6,650천명, 321,950원(소득하위 70%, 국고보조율 82.04% - 제도운영비 : 22,645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 현황 및 정책 수요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기초연금 기준 개편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고령화 현상에 따른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512만 6,000명에서 2024년 656만 7,000명으로 7년간 약 28%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의 67.3%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2018년 9.2조에서 2024년 20.2조로 2.2배 증가하였다.

[2018~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조원, 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7,639	8,014	8,482	8,835	9,250	9,712	9,757
기초연금 수급자 수[1]	5,126 (67.1)	5,346 (66.7)	5,660 (66.7)	5,973 (67.6)	6,239 (67.4)	6,509 (67.0)	6,567 (67.3)
결산 및 예산(안) (국비 기준)	9.2	11.6	13.2	15.0	16.3	18.5	20.2

주: 1. 2024년 1월 기준
1) ( )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대비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 2018~2024년 기초연금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는 2018년 9조 1,028억원에서 2024년 20조 1,78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2018년 23%에서 2024년 17.2%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의 국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24년 기초연금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91,028	114,745	131,401	149,414	160,917	185,078	201,789
	(77.0%)	(78.0%)	(78.3%)	(79.2%)	(80.5%)	(82.1%)	(82.8%)
지방비	27,194	32,457	36,315	39,167	38,786	40,415	41,806
	(23.0%)	(22.0%)	(21.7%)	(20.8%)	(19.5%)	(17.9%)	(17.2%)
계	118,222	147,202	167,716	188,581	199,703	225,493	243,596

주: 기초연금급여(확정내시 기준), 제도운영비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기초연금 평균 국고보조율도 2015년 74.5%에서 2024년 82.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초연금 평균국고보조율 현황]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국고보조율	74.5	76.3	76.6	77.0	78.0	78.4	79.2	80.52	82.04	82.81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국가가 40~90% 수준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산정기준]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80 이상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주: 1.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이전 최종 예산자료 3년간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산정
자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2]

○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 구간 중 한 구간(80% 미만)에 모든 지자체가 편중되어 있어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2021년간 전국 지자체 재정자주도 구간별 분포 현황을 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228개) 모두 재정자주도 80%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차등보조율이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인구 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기초연금 전국 지자체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구간별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재정자주도 구간 기준	지자체 수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초연금	90% 이상 (국고보조율 40%, 50%,60%)	0	0	0	0	0
		(0%)	(0%)	(0%)	(0%)	(0%)
	80% 이상 90% 미만 (국고보조율 50%, 60%, 70%)	0	0	0	0	0
		(0%)	(0%)	(0%)	(0%)	(0%)
	80% 미만 (국고보조율 70%, 80%, 90%)	**228**	**228**	**228**	**228**	**228**
		(100%)	**(100%)**	**(100%)**	**(100%)**	**(100%)**
	계	228	228	228	228	228
		(100%)	(100%)	(100%)	(100%)	(100%)

주: 1. 226개 시군구 + 2개 시도(세종, 제주) 기준으로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보조사업도 전국 기초자치단체(228개) 모두 재정자주도 80% 미만 구간에 속하였으며, 차등보조율이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보조사업 전국 지자체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구간별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재정자주도 구간 기준	지자체 수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조사업[1]	85% 이상 (기준보조율 -10%p 또는 기준보조율 적용)	0	0	0	0	0
		(0%)	(0%)	(0%)	(0%)	(0%)
	80% 이상 85% 미만 (기준보조율 적용)	0	0	0	0	0
		(0%)	(0%)	(0%)	(0%)	(0%)
	80% 미만 (기준보조율 또는 기준보조율+10%p 적용)	**228**	**228**	**228**	**228**	**228**
		(100%)	**(100%)**	**(100%)**	**(100%)**	**(100%)**
	계	228	228	228	228	228
		(100%)	(100%)	(100%)	(100%)	(100%)

주: 1. 226개 시군구 + 2개 시도(세종, 제주) 기준으로 산출
1) 보조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통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 결과적으로 현재 재정자주도 적용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경우 재정자주도 기준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고자 하는 차등보조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비용 분담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효과분석 및 국고보조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를 추진하였으나, 국고보조율 하락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이전에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연구결과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 현행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기초연금 도입('14.7) 이후 지난 10년간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추이 및 지역별 재정 현황과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간 재정력 및 정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개편(안) 공론화 결과('24.4.21), 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급여 상향 의견이 52.3%로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축소 및 차등지급 의견(45.7%)보다 6.6%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안(52.3%, 수급범위 유지・급여 상향)과 소수안(45.7%, 수급범위 축소, 차등지급)이 오차범위(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4.42%p) 내에서 격차를 보인바,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정합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대입한 결과 도출하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가.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수}}{\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3.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수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은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민박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해 민박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박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8억 7,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3회계연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26,156	26,156	184	-	26,340	23,027	62	3,251	18,586
안전민박 활성화	877	877	-	-	877	877	-	-	8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합법민박 운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박업의 건전성 강화 및 활성화 민박업소 정보 제공 및 운영자 대상 교육 지원을 통한 합법업소 이용·운영 제도
사업내용	안전민박 기반조성 - 세이프스테이 홈페이지 운영 - 불법업소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 안전민박 교육·홍보 - 불법숙박 근절 캠페인 광고 제작·배포 - 합법민박 운영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민박업 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사업예산	877백만원 - 안전민박 기반조성: 182백만원 - 안전민박 교육·홍보: 695백만원
사업수행자	한국관광공사(민간경상보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 실시한 민박 사업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현황을 보면 5개 시·도에서 6회 교육에 그쳤고, 교육 시기 또한 10월~11월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오프라인 교육의 실시 지역 및 횟수 등을 증가시키고, 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박사업자의 교육 수강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및 한국관광공사는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에 따라 5종의 민박 사업자(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호스텔업·농어촌민박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2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이는 5종의 민박사업자 중 관광펜션업 및 호스텔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3)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 등을 받아야 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사업자는 의무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재량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

민박업 종류	관할법률	교육 관련 규정	교육 미수강시 제재수단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공중위생 관리법」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위생교육 의무 수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매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 의무 수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관광펜션업 및 호스텔업, 농어촌민박업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 등을 수강하는 점과 달리, 동 사업에 따른 교육대상자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전체 교육대상자 대비 수강률이 저조한데, 2023년도의 경우 전체 교육대상 인원 4,644명 중 543명이 교육을 수강하여 수강률은 1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 교육 수강인원 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대상 인원(A)[1]		3,408	3,332	3,382	3,774	4,644
교육수강 인원	오프라인	813	77	미실시	332	319
	온라인	-	237	132	186	224
	합계(B)	813	314	132	518	543
교육 수강인원 비율 (B/A)		**23.9**	**9.4**	**3.9**	**13.7**	**11.7**

주1) 교육대상인원: 연도말 기준 전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5종의 민박사업자는 각각 적용되는 법령만 다를 뿐 민박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유사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광펜션업·호스텔업·농어촌민박업은 모든 사업자가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또한 사업자의 교육 수강인원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202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 횟수를 보면 5개 시·도에서 6회 교육에 그쳤고, 교육 시기 또한 10월~11월에 집중되어 있어 상당수의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 지역 및 횟수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전국에 걸쳐 3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 교육 횟수를 줄인 후 2023년까지 여전히 오프라인 교육 횟수는 적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민박사업자 대상 교육 횟수 현황]

(단위: 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실시 횟수	오프라인	32	1	-	5	6
	온라인	-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오프라인 교육 실시 장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전남	미실시	서울, 충남, 강원, 경북, 전북	서울, 부산, 강원, 경북, 전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교육 실시 현황]

교육차수	교육지역	교육일자	교육장소
1차	서울(중구)	23.10.11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2차	서울(중구)	23.10.12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3차	강원(강릉)	23.10.24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4차	경북(경주)	23.10.25	황룡원
5차	전북(전주)	23.11.09	베스트웨스턴 전주
6차	부산(해운대구)	23.11.20	부산 센텀호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향후 교육의 실시 지역 및 횟수 등을 증가시키고, 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박사업자의 위생 및 안전교육 수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사업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관광펜션업이나 호스텔업 사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 또한 매년 위생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박사업자 수 현황(2024.5. 기준)]

(단위: 개, %)

민박업 종류	개수	비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3,622	8.6
한옥체험업	2,816	6.7
관광펜션업	905	2.1
호스텔업	1,150	2.7
농어촌민박업	33,680	79.9
합 계	42,173	100.0

자료: 세이프스테이(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민박정보사이트)

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실집행 이월 최소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황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계획현액 2,47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3회계연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47,000	247,000	-	-	247,000	247,000	-	-	167,489
주택지원	48,939	48,939	-	-	48,939	48,939	-	-	27,937
건물지원	61,174	61,174	-	-	61,174	61,174	-	-	36,646
융복합지원	134,582	134,582	-	-	134,582	134,582	-	-	99,264
사후관리	905	905	-	-	905	905	-	-	2,312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구축	1,400	1,400	-	-	1,400	1,400	-	-	1,3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동 사업은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사후관리·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구축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주택지원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에너지원에 따라 50~70% 보조하며, 건물지원은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 등의 건물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에너지원에 따라 50~80% 보조하고 있다. 융복합지원은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

구분 (지원방식)	2023년 집행 내역
주택지원 (민간보조)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옥상 등) 태양광 및 비태양광 설비보급 지원 - 31,769가구(보조율 50%) × 1.54백만원 = 48,939백만원
건물지원 (민간보조)	· 상업용 건물, 공장 등의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 1,187개소(보조율 50%) × 51.5백만원 = 61,174백만원
융복합지원 (민간보조)	· 에너지원간 융합, 구역복합형 설비보급 지원 등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제조·설치 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주택단지, 특정지역 등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설비를 함께 설치 · 설비보급 114개 사업(보조율 50%) × 1,180.5백만원, 모니터링 및 성능검사 등 = 134,582백만원
사후관리 (사업출연)	· 주택, 건물 등 지원사업 후 고장접수 및 수리, 설비 가동율 확인 등 · 고장접수센터 운영 130백만원, A/S 전담업체 운영 108백만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180백만원, 실태조사 등 487백만원
원스톱서비스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출연)	· 지자체 발전사업 인허가 등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400백만원, 풍력 활성화 연구용역 및 풍력추진지원단 운영 1,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기관은 2023년 보조금 교부액 2,470억원 중 2,259억 5,600만원을 실집행하고, 210억 4,400만원을 실집행 이월하였다. 실집행 이월은 대부분 건물지원 내역사업에서 발생하였다. 건물지원 내역사업의 이월액은 187억 500만원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후순위 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면서 이월이 발생하였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실집행				
	교부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47,000	247,000	225,956	21,044	-
주택지원	48,939	48,939	47,016	1,923	-
건물지원	61,174	61,174	42,469	18,705	-
융복합지원	134,582	134,582	134,425	157	-
사후관리	905	905	719	186	-
원스톱서비스지원플랫폼구축	1,400	1,400	1,327	7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 건물 지원은 보조금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 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연도말 실집행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건물 태양광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2023년 실집행 예산현액 2,470억원 중 연도 내에 2,259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210억 4,400만원(8.5%)이 이월되었다. 실집행 이월은 대부분 건물지원에서 발생하였다. 건물지원은 2023년 실집행 예산현액 611억 7,400만원 중 424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187억 500만원(30.6%)이 이월되었다. 건물지원의 실집행 이월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여 후순위 지원대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지연되며 발생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지원에서의 실집행 이월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에는 사업 공고기간을 전년에 비해 한 달 앞당겼다. 2022년에는 5월에 사업공고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4월에 사업공고가 이루어졌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2023년에 사업공고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전체 예산 중 이월액 비중은 2022년 8.4%에서 2023년 8.5%로 증가하였다. 건물지원의 경우 이월액 비중은 2022년 31.7%에서 2023년 30.6%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실집행 이월액 비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실집행			2023 실집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321,435	294,454	26,981 (8.4)	247,000	225,956	21,044 (8.5)
주택지원	65,000	63,321	1,679 (2.6)	48,939	47,016	1,923 (3.9)
건물지원	78,540	53,617	24,923 (31.7)	61,174	42,469	18,705 (30.6)
융복합지원	175,695	175,586	109 (0.1)	134,582	134,425	157 (0.1)
사후관리	800	707	93 (11.6)	905	719	186 (20.6)
원스톱서비스지원	1,400	1,223	177 (12.6)	1,400	1,327	73 (5.2)

주: ( )는 예산액 중 이월액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건물지원은 2023년에 전년대비 실집행 이월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선정액 대비 보조금 포기액 비중은 2022년 19.7%에서 2023년 26.1%로 증가하였다. 건물지원에서는 보조금 선정 후 포기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전년대비 사업공고기간을 앞당기며 실집행 이월액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 보조금 선정 후 포기는 건물지원 대상 사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포기하며 발생한다. 사업자는 비용 부담, 비용 대비 전기료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3년에 건물지원 보조금 지원 포기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실집행 이월이 증가할 수 있었으나, 사업공고기간을 앞당긴 효과가 이를 상쇄하여 실집행 이월액 비중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원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공고기간	보조금 신청수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선정수	보조금 선정액	선정후포기 선정수	선정후포기 보조금 선정액
2022	2022.5.9.~2022.6.3.	2,420	157,925	1,237	91,938	313	18,140 (19.7)
2023	2023.4.10.~2023.5.12.	2,275	128,178	1,509	78,500	385	20,483 (26.1)

주: ( )는 보조금선정액 중 선정후 포기 보조금선정액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건물지원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분야 보조율을 2022년 50%에서 2023년 47%로 하향 조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태양광 분야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2024년 44%, 2025년 40%까지 낮출 계획이다. 건물지원은 2023년 예산 611억 7,400만원 중 283억 2,900만원(46.3%)을 태양광 설비에 배정하였다. 태양광 분야 보조율 인하는 건물지원 대상 보조사업자의 설비 투자 대비 효과에 영향을 미쳐 보조금 지원 포기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 건물지원의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당 보조금(지원단가)을 일률적으로 정액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외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 용량 당 설치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일반 건물의 일반모듈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단가가 2022년 915원/kW에서 2023년 972원/kW로 6.2% 인상되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단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선정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포기가 증가하여 건물지원에서 개별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건물지원에서는 건물의 용도나 형태 등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정액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지원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원/kW)

발전원	지원대상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2022	2023
태양광	일반	일반모듈	915	972
		저탄소모듈	981	1,009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144	1,120
		저탄소모듈	1,236	1,167
	건물일체형	별도 검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택지원에서는 건물지원과 다르게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지원에서도 주택유형별 보조금 지원단가가 있지만, 보조금 신청자의 자부담액은 사업 참여기업(시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총사업비 상한액 내에서 결정된다. 반면 건물지원에서는 총공사비와 관계없이 지원단가에 따라 정액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지원 보조금 상한제]

(단위: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상한액		도서지역 지원단가 상한액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2.0kW 이하	5,024	5,174	5,374	5,554
2.0kW 초과 3.0kW 이하	5,966	6,206	6,386	6,6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건물지원에서는 연례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분야 보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사업 공고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실집행 이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지원 등 다른 지원유형에 비해 실집행 이월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지원에서 사업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 있는 건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포기로 인한 실집행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물지원 보조금 지원대상별로 실제 공사비 대비 보조금 비중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의 자부담 현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회